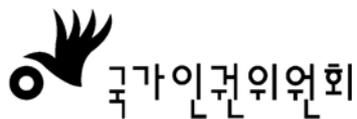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 일 시 || 2007년 4월 12일 (목) 오후 14: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초대의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2일(목)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4월 4일 대통령이 서명하였습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이며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 한 단계 성숙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토론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보완점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의 관심사항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 일시 2007년 4월 12일 (목) 오후
14: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Program

사회: 김 칠 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시 간	내 용
14:00~14:10	인사말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 1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	
14:10~14:35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 박 종 운 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14:35~15:00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 조 형 석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15:00~15:20	 발제 3.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 - 곽 숙 영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15:25~15:35	휴 식
제 2 부 전문가 토론	
15:35~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이 법제위원 (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김정열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남찬섭 과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배용호 정책실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 정영선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 홍관표 서기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제 3 부 종합 토론	
17:00~17:50	발제자, 토론자 및 참석자 토론
17:50~18:00	폐 회 사

목 차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 박 중 운 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45
 - 조 형 석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 발제 3.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 83
 - 곽 숙 영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 토론 1. 109
 - 김 광 이 법제위원 (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토론문 117
 - 김 정 열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토론 3. 사회적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125
 - 남 찬 섭 과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토론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적용과 이행을 위한 과제 133
 - 배 용 호 정책실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 토론 5. 139
 - 정 영 선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 토론 6. 143
 - 홍 관 표 서기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 부 록 147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9
 2. 장애인권리협약 (국문) 171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문) 199

제 1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권리협약

-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중운 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 발제2.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조형석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 발제3.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
곽숙영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 중 운
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 종 운

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및 경과

1. 배경

어느 법이나 제도든, 그것을 만들어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만큼 필요성과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¹⁾, 장애여성 및 노령 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 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장애인계에서는 우리 국민의 10% 수준인 480만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이 장애인 인구가 증가한데에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구노령화와 같이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에 의한 순증가도 있지만, 사회 복지의 발전에 따라 그동안 숨겨지고 함구되었던 장애인이 제도에 편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에 의한 반작용 혹은 저항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 운동으로 발현되는데, 차별받는 현실로 인해 운동의 목표는 인권 쟁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조직적이고 치열한 투쟁이 교육과 노동에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 영역으로 확산·전개 되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동일 유사한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혹은 권리구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권위는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했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실정법은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최후의 권리구제기구라 할 사법부는 기나긴 재판을 통해 장애인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그 결과는 불과 250만원 정도의 위자료뿐, 차별행위는 시정되지 않았다. **실정법과 제도의 한계**가 그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1990년 미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이 제정된 후,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호주(1992년), 영국(1995년), 스웨덴(1999년), 독일(2002년)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홍콩(1995년) 등 **외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었다. 외국은 이미 급부적, 시혜적, 배려적인 장애인 정책에서 인권과 평등, 자기결정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 경과

2007. 3. 6. 17:30경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4. 4.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4. 9.자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고 하니, 2008. 4. 9.부터 시행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말, 몇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2년에 열린 네트워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차별금지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끝에 2003. 4. 15. 마침내 한국장총과 장총련, 제3그룹 등 장애인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장추련)를 결성하였다.

장추련 법제정위원회(법제정위)는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인 2003. 3. 15. 구성되었고, 첫 회의에서 영겁결에 위원장이란 감투를 쓰게 된 필자는 그 당시 참석했던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법률가들 앞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① 비록 필자가 법률가이긴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만큼은 정부 당국자, 전문가, 법률가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²⁾였다. ②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법을 제정해 나가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³⁾이었다.

2) 이는, 2003. 11.경 - 2004. 3.경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매주 1-2차례씩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과 함께 모여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절정에 달하였고, 장추련의 실무그룹 등은 단 한 번도 위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3) 2005 - 2006년에는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하

법제정위는 실무위원회와 협력하여 그 해 6. 25. - 10. 29.까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라는 구호 아래 1번의 공청회, 9번의 연속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열린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국토순례(제주도), 10월에는 ‘동아시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장추련이 주관하는 국제장애인교류대회, 12월에 국회인권포럼에 참여하였다. 2003. 11.경 - 2004. 3.경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매주 1-2차례씩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과 함께 모여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04. 5.경 법제정위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에도 장추련 내부 토론, 외부 토론, 전문가 토론을 걸쳐 수정된 장추련안은 의원입법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5. 9. 16. 민주노동당(대표발의 : 노회찬)을 통하여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장추련의 의도와 달리 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되었고,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제출 예정, 정부안 미제출 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2006년에는 불가피하게 인권위 점거 농성이 이루어졌고, 2006. 5. 21.경 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논의와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충분히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6. 8. 16.경부터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위) 주관으로 장추련과 정부 각 부처가 민주노동당안, 결국은 장추련안을 놓고 협의하게 되었다(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그동안 외부에서는 투쟁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경제단체들을 향한 농성, 시위 투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차별시정위에서의 협의는 민주노동당안을 원안 그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장추련측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폭 변경, 삭제를 요청하는 정부 각 부처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차별시정위 조정안이 나오게 되었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조정안은 열린우리당으로 넘겨

여 장애여성 조항을 삽입하는데 직접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제협약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의 성장과 성숙은 위와 같은 한국 장애계의 역량 증대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졌고, 열린우리당은 위 조정안을 기초로 약간의 변경을 가해 여당안(대표발의 : 장향숙)으로 발의하였으며, 그 즈음에 발의된 한나라당(대표발의 : 정화원)과 함께 3당안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거듭된 논의 끝에 여당안을 기초로 약간의 첨삭을 하는 정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모순·충돌되는 몇 가지 조문만 손질하는 선에서 국회 본회의로 상정하였다.

그리하여 장추권 법제정위가 결성된 지 4년 만인 2007. 3. 6. 17:30경, 그야말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난관을 뚫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정법 현실의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1. 개괄

2006. 3.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그동안 외국에서나, 이론적으로나 거론되어 왔던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제4조)**, ② 최근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한 점(제7조)**, ③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점(제8조), ④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제2장)**, ⑤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정신**

적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제3장), ⑥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의 형태로 두고 있다는 점(제40조), ⑦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제43조), ⑧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제46조), ⑨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제47조), ⑩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제48조), ⑪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제49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제50조) 벌칙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차별시정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민관공동기획단)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노당안(그 근본은 장추련안)과 비교하면서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2. 총칙

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제2조),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제3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제4조), 차별판단의 기준(제5조), 차별금지선언(제6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8조), 인권위법과의 관계(제9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제1조). 이는 민노당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차별금지 및 차별받은 권익의 효과적인 구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민관공동기획단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쟁점 중 하나이다. 장추련은 ‘장애’의 개념 규정에 ① 장애의 기간(장기간, 단기간, 일시적 모두 포함), ② 장애 판단의 기준(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으로부터 출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조화), ③ 장애 발생의 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아니라,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이 그 이유임), ④ 장애의 궁극적인 내용(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즉, 기회불균등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상태)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민노당안은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 및 장애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데 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고 규정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경우만 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 간의 충돌이라 볼 수 있는데, 복지적 관점에서는 특정된 장애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적 관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때 그러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기간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대안 제안 이유에서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사유로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민관공동기획단에서의 협의에서도 정부 측은 이처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개념⁴⁾과의 조화, 장애인 판단의 용이성, 국제장애인권

4)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리협약에도 ‘장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점⁵⁾ 등을 ‘장애’ 개념 축소의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차후 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는 광고,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정보(전자정보, 비전자정보, 개인정보), 정보통신,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사업자, 체육, 가정 및 가족, 복지시설 등, 시설물,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건강권, 의료인 등, 의료기관 등, 괴롭힘 등⁶⁾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20개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정의 또한 기존 법령과의 조화를 이유로 민노당안보다는 협소화된 감이 없지 않으나, 차츰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⁷⁾.

제4조는 ‘차별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⁸⁾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호와 관련하여 민노당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표현 및 학문, 예술행위의 자유와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광고를 통한 차별로 한정하였다. 그 밖에도 ‘정당한 편의’에 대한 개념 규정⁹⁾(제2항), 정당한 사유와 적극

-
- 5) 만일 아직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오해라 할 수 있는데, 국제장애인 권리협약 제1조(목적)에 “장애인은, ...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장기간의’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위 협약은 이는 이른바 ‘개방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장기간의 ..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의 ... 사람을 포함한다(include).”고 규정함으로써, “장기간의... 사람”은 당연히 포함하되,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단기간, 일시적인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 6)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 7) 예컨대, 제4호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6호 ‘교육기관’의 범위 등인데, 이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법률 자체에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장추련과 제한하고자 하는 행정 각 부처 간에 대립이 예상된다.
 - 8)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용어는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 번역 내용, 입법안의 ‘합리적인 배려’라는 표현에 비해,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과 인권적 관점을 보다 잘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적 조치¹⁰(제3, 4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5조).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보편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그리고 이들을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제8조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국민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 9)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10)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및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항)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제4항)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

제9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시정기구가 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미비된 점이 있다면 인권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차별금지

제2장에는 ‘차별금지’라는 제목 아래 6개 절을 두고 있는데, 차별의 영역을 ① 고용, ② 교육,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 모·부성권·성 등, ⑥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내지 제32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데, 민주노동안에는 ① 고용, ② 교육,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④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⑤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⑥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⑦ 문화·예술, ⑧ 체육, ⑨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⑩ 모·부성권, ⑪ 성, ⑫ 가족·가정·시설, ⑬ 건강권, ⑭ 폭력 등 14개 영역에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관공동기획단에서의 협의를 거치면서, 유사한 영역은 하나로 합하는 한편, 해당 조문 또한 기존 법령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삭제 또는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간결화, 협소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6개 영역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제2장(차별금지)은 2003. 11.경 - 2004. 3.경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시도할 때에는 거의 소책자 분량이었다가 법제정위안, 상임집행위원회안, 장추련안, 민노당안을 거치면서 삭제, 통합, 간결화 과정을 통해 원래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면서 분량을 줄이는 작업이 계속되었는데, 역시 민관공동기획단, 국회를 거치면서 좀 더 다듬어졌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제1절(고용)은, 차별금지(제1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1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제1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0조(차별금지)는 ①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②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은 물론, ②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 위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시행령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근로자의 수나 매출액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부터 작은 사업장으로 시간적 단계에 따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인데, 가급적이면 현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장애인을 1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제8조 제2항 참조). 한편,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는 ①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금지, ②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에 대한 사용자 부담 원칙, ③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교육)은, 차별금지(제1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조(차별금지)는, ①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전학 거절 금지,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③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④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금지, ⑤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⑥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욕·비하 금지, ⑦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

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 추가시험 등 요구 금지, ⑧ 학업시수 위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① 교육책임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제1항 각호의 수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3절(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5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6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7조),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8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제19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1조), 개인정보보호(제22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3조),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24조),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①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하고,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⑦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는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직접 및 간접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

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해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① 이 조에서 정한 ‘행위자 등’은 자신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③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는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각 부여하면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광고를 통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는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③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4절(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26조)와 참정권(제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⑤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⑦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직 할 것이다.

제27조(참정권)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절(모·부성권·성 등)은 모·부성권의 차별금지(제28조), 성에서의 차별금지(제2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는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선언하면서,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는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선언하면서,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기타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절(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은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제30조),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31조), 괴롭힘 등의 금지(제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는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에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차별금지)는 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면서,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기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④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고려하게 될 것인데, 위 두 법률은 모두 시설과 설비에 대한 부분을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와 용품 및 기구 등 제2장에서 요청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상당부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 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시설·사업장·교육장 등의 종류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 역시 현재의 관련 법률보다 더 나은 편의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시행시기가 5년 후 10년 후로 미루어진다면, 사실상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의미는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제2장의 내용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 취지와 내용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4조(문화 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등이 문제될 것인데,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할 제공자의 범위, 단계적 시행시기 및 적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한 해 동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 각 부처와 장추련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다.

4.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장에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 사유에 억눌려 있는 장애 여성, 장애아동,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33조 내지 제37조).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되며,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해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되고,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 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②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는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는,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관한 규정은 민노당안의 틀과 구조를 기본적으로 수용한 것이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장추련 법제정위에서도 중증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다가,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녹여 내도록 하되,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전후하여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최소한의 근거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몇몇 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어 민관공동기획단 협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여당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다. 위 조항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5.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4장에는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38조 내지 제41조)과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42조 내지 제4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하여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인권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 내지 제41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제38조), 인권위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제39조), 이와 같은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인권위법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2항). 한편, 인권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는데,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제40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의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권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1항).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법 제44조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한 것이다(제42조 내지 제45조, 제50조).

인권위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법 제44조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42조),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법 제44조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②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④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① 차별행위의 중지, ② 피해의 원상회복, ③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3조), 한편,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되며(제44조),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이와 같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제50조).

차별시정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며, 그 기구에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관공동기획단 최고의 쟁점이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인권위에서는 장애를 비롯하여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 사유들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동일 유사한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혹은 권리구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인 차별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위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실정법은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기나긴 재판을 통해 장애인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도 불과 250만원 정도의 위자료만 주어졌을 뿐, 여전히 차별행위는 시정되지 않았다.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에 장추련에서는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권 등 보다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열망하였다. 그 결과 민노당안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①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③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규정을 준용하여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직접 명할 수 있고(제64조),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 부과, 불복, 재판, 징수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제85조).

그러나, 2004년말경부터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5. 7. 29. 개정된 인권위법은 ①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② 인권위 내에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제12조 제1항),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

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제12조 제3항).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 및 차별에 관한 한 상당히 진보적인 계획, 문건, 결정들을 내놓고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에도 관심을 쏟게 되자,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은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권 위에서는 장애뿐만 아니라 인권위법 상의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운영을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장추련은 위와 같은 겹겹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민관공동기획단에서 국회 발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차별시정기능은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선에서 법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권위 및 인권위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와 장애인, 차별, 차별행위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위의 차별판단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보다 확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인권위 내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2항). 따라서,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권위법 제12조 제1항 “...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등’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포함되도록 인권위 규칙

을 개정하면 된다. 현재 인권위는 운영규칙 상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있다(규칙 제11조).

이처럼 인권위 규칙 개정만으로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차별 사유 중 하나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와 동등한 위치에 세우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고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¹¹⁾. 굳이 위계질서를 따지자면 차별시정위원회 산하에 여러 차별 사유에 따른 소위원회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가 되는 것이 맞다. 또한, 현재 인권위법 및 운영규칙 상의 소위원회라는 것은 인권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위원이 위원이 되어 구성되는데, 이러한 소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지만(제24조), 시정권고 기타 주요 권한은 원칙적으로 전원위원회에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존의 소위원회 조직만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아가,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차별 사유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는 것이다.

③ 인권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진정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거나 직접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차별 사유 간에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장애인들이 다른 차별 사유보다 앞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1)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인권위법 개정을 논의하고 싶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나 마느냐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인권위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장애인차별금지법마저 향후 몇 년 동안은 제정되기 어려운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위 안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정을 관철시킨 그 의미를 더욱 드높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될 때에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2006. 7. 24.경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법 제정 움직임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인권위법 개정 운동으로까지 나아간다면, 다른 차별 사유에서도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별도의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6.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5장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제46조), 분쟁해결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원고와 피고 간에 입증책임의 분배(제47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임시구제조치(제48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손해배상)는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책임이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 과실 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차별행위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점에 관한 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에 있어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있어서는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제1항은 그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제2, 3항은 그 점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몇 가지 보완책을 두고 있다. 즉,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을 보다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제2, 3항은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추련 법제정위는 손해배상에 대한 과거의 판례 등 사례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로는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학습권을 침해당하여 여러 해 동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금액이 고작 250여만원이라면, 차별당한 장애인으로서 그동안의 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은 물론 법원을 오고 가는 데 드는 비용이나 재판을 준비하는데 소요된 시간조차도 보상받지 못하는 반면, 차별행위자는 몇 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2-300만원 주고 끝내려고 할 뿐 결코 차별적인 태도와 환경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차별적인 행위, 환경, 태도를 시정하는 것이 차별행위자에게도 도움이 될 정도의 손해배상액 판결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법원

의 위자료 기준을 높인다거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거나,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한다거나, 형벌에 처하는 방법 등도 함께 시도되면서, 특히,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¹²⁾를 우리나라에 알맞게 도입하는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민노당안에는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악의에 의한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차별행위를 고의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제76조).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제·개정 당시에도 그러하였듯이 위 규정으로 인한 부담을 상당부분 떠안아야 할 기업, 경영자 단체의 반발에 부딪쳤고, 법리적으로도 현재의 실손배상¹³⁾ 제도와의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로 인해 장추련은 경영자 단체를 향한 시위와 농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으나, 민관공동기획단 협의 과정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만일 이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바라다면 지금 당장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고, 열린우리당안이나 한나라당안에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는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의 존부(存否)가 불명(不明)인 경우에 이를 어느 쪽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소송의 승패로 직

12) 배심재판에 의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가해 회사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정도의)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판결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징벌에 해당할 정도로 금전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인바,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다.
13)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함으로써 피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고 당사자 간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는 법리

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누구에게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 그 때문에 장추련 법제정위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민노당안에는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제77조). 그리고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¹⁴⁾에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민관공동기획단 협의 때부터 장추련이 제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던 행정 각 부처의 입장 표명에서부터 그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여당안에는 적절하게 배분하는 정도로 수정되고 말았다. 대단히 아쉽지만, 제46조에도 어느 정도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향후 실제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현실화되면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는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 도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추련 법제정위는 논의 초기에 각종 권리구제 수단으로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것, 법원에 의한 것으로 대별한 후, 법원에 의한 것 중 중요한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혹은 단체)소송 제도 등과 더불어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차별시정기구에 시정명령권과 이행

14)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금 부과권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한 결과,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는 지속적으로 고민되지 못하였고, 실제로 민노당안에도 빠졌다. 그러나, 민관공동기획단 협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 차별시정기구에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권을 부여하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 그동안 장추련이 집중적으로 요구하였던 제안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을 제정하려면 지금 당장은 사실상 도입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이러한 공백을 대체할 만한 제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인권위가 주도했던 차별금지법안 작업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였던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는 증명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낮은 소명만으로도 제소 전, 제소 후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이 본인에게 불리한 학교로 전학 조치된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그 타당성을 다투기 이전이라도 그러한 차별적 행위를 중지시키고 현재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를 이유로 임금에 있어 차별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본안 판결이전이라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임시적이거나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7. 벌칙

제6장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자에 대한 형사벌(제49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50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차별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악의적’이라 함은 ① 차별의 고의성, ②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위 벌금형을 과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 한 벌칙은 인권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장추련에서는 가급적이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금전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교육형을 도입하기를 소망하였고, 이에 따라 민노당안에는 “① 장애인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처한다. ② 이 법에 정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행위의 성격상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제78조).

제50조(과태료)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데, 위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추련에서는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로 일원화하되,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8. 부칙

법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의 문제도 민관공동기획단의 쟁점 중 하나였다. 장추련은 정당한 편의 등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조절하더라도 법 시행 자체는 한 해라도 빨리 시행하기를 소망하였고, 행정 각 부처는 가급적이면 늦게 시행되기를 염원하였다.

차별시정위 조정안이 열린우리당으로 넘겨질 때까지도 논란이 그치지 않았지만,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되, 다만, 제10조 내지 제37조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 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 대상은 해당 규정에 위임한 대통령령¹⁵⁾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절충하고 있다. 즉, 법 자체의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하되,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 범위 및 정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칙 제2조는 인권위 내에 설치될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 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의의 및 향후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당사자주의). 미국의 ADA나 영국의 DDA가 그러하였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

15) 결국 대통령령에는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작부터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 의견만 제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된 장애인 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국회 등과 협상하였다. 그로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정당한 주장, 사회 참여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농축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②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이다(연대주의).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처럼 범장애계(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도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연대 조직도 있다. 한국장총이나 장총련과 같은 거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난 몇 년을 지탱해 왔다. 장추련의 힘은 여기로부터 출발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의 공통성과 보편성의 결과물이라 할 장애계 내부 단체들 간의 결합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노동, 교육, 여성, 인권, 종교, 문화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장추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추련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평화 등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며 보다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전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이었다

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④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인권 운동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지나간 세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외국인, 혼혈인, 성적 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다수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법 제정 움직임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차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이고 각론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⑥ 지금까지는 장애인 운동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법 제정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에 당사자(혹은 수요자) 중심의 법률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그동안 장애인 정책의 핵을 담당해 왔던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인권위와 법무부 등 인권 담당 기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

부 등 관련 부처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어느 부처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러한 특성이 입법을 지연시킨 사유 중 하나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법 가능성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06년 5월이었다. 장추련의 인권위 점거 농성 과정에서 5. 21.경 인권위에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마치 이를 곧바로 받아주기라도 하듯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중재 혹은 조정기관을 자처하고 나서 주었다. 그리하여 차별시정위 주도로 장애인 당사자 측에서는 장추련(주로 법제정위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관련 행정 각 부처와 인권위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다. 마침내, 2006. 8. 16. 첫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모임의 명칭을 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장추련 측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임이 되기를 원했고, 행정 각 부처는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차별시정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으로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비로소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2. 12.까지 전체 회의 7차례, 소위원회 5차례 등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의 틀은 높아졌으나, 중요한 쟁점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 이때 차별시정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새워 조정안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안으로(혹은, 자신들의 공로나 치적으로 삼지) 하지 아니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넘겨서 여당안(대표발의 : 장향숙)으로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 입법의 대들보를 놓았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법률가 등 지원그룹이 결합한 장추련의 법 제정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위의 결단, 청와대의 굳건한 법제정 의지¹⁶⁾, 위원장을 비롯하여 담당 비서관과 행정관 등 차별시정위 관계자들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노력, 행정 각 부처 담당 실무자들의 열린 마음과 협력,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회원 의원 등 장애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추진력... 이 모든 것 중 하나라도 부족하였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찬 바람 부는 거리에서 나무끼는 것발, 도심 광장을 울리는 메아리 없는 합성으로만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 이 점에서 당사자(수요자), 관련 부처, 청와대, 국회 등 법 제정에 책임 있는 각 부문들이 법 제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보여준 것이 장애인차별금

1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통령 후보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법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종합 예술, 법제정 운동의 결정판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인 것이다.

2. 앞으로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옹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성 차별 철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의 지평이 장애까지 확대되었고, 다른 차별 사유에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됨으로써 운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됨으로써 더욱 확산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① 장추련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감시 및 개정 추진연대’로 개편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문제 해결 방법이 개정이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② 공포(4월 9일) 1년 후 시행에 발맞추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차별시정위를 중심으로 관련 각 부처가 합동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다(정부 합동 준비단). 우리는 시행령 제정 과정을 감시하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령이 나오도록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인권위법의 개정이 중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제40조). 따라서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거나 직접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싸워나가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전후에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⑤ 법제도가 변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법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이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세미나,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관련자들과 만나야 하고, 각종 학교, 직장 등의 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만나야 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야 한다. 그밖에 여러 방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고 큰 문제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결론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제는 이 법이 진실로 살아 역사하여 장애인의 삶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는 표어를 보았다.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장애인차별 철폐의 길 위에서, 우리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모두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쟁전하여야 할 것이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 인권은 그것이 발생시키는 국가의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의 침해나 위반을 말할 때는 관련된 국가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¹⁾

I. 개관

1.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배경

멕시코 Fox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2001년 제56차 UN 총회의 의결로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지난 5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었다.

2006년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돈 맥케이 의장이 집대성한 의장안(Working Text)을 기반으로 국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하였으며, 검토위원회(drafting committee)를 거쳐 12월 13일 오전 10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장애인권리협약은 20개국의 가입 및 비준으로, 선택의정서는 10개국의 가입 및 비준으로 발효되며, 현재 협약과 선택의정서가 동시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본 협약의 성안과정에 참가하였는데, 특히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여성장애인, 접근권, 이동권, 자립생활과 관련한 별도조항을 제안하

1) Rolf Kunnemann, “A Coherent Approach to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7, No. 2, 1995, p. 338.

였으며 각각 제6조(여성장애인), 제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 제19조(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3월 30일에 서명개방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국가는 서명, 비준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2007년 4월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은 84개국, 선택의정서는 44개국, 자메이카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²⁾

2.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권리협약 자체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의 협의를 거쳐 완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두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1) 장애인, 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등에 관한 정의 2) 취약한 계층으로 다중적인 차별요소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조항의 존치 3) 장애인의 법 앞의 동등한 법적능력 부여 및 평등권의 보장 4)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등 인권보호·신장 5)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6)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의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권리 보장 7)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관련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모두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통보 및 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2) Algeria, Antigua y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ape Verde, Chile, China, Colombia, Congo (Republic of Congo),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thiopia, Finland, France, Gabon, Germany, Ghana, Greece, Guatemala,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ordan, Kenya, Liberia,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FYORM), Malta, Mexico, Moldova, Morocco, Mozambique,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Panama, Paraguay, Peru,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San Marino, Seychelles, Sierra Leone,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yria, Thailand, Tunisia, Turkey, Uganda, Uruguay,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Yemen, European Community. (비준국가 1개국: Jamaica, 협약문과 의정서 모두 서명 44개국은 밑줄 표시하였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이 국내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communication)을 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해당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선택의정서는 제6조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정상외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개시된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사권한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연결되어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행하여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하며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적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II.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내용

1. 국가의 의무

본 협약은 여타의 국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며 각국의 비준 이후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이행의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의무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즉각적 의무로는 재정 지출을 거의 동반하지 않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및 차별의 금지 또는 재정지출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향유를 충족시킬 최소핵심¹⁾의무가 이에 해당되며,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는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필요 및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대부분의 의무가 이에 해당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러한 적극적 의무와 점진적 실현의 의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간의 존엄에 기반을 둔 보편적 규범과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규범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권적 성격 및 차별에 해당하는 규범은 즉각적²⁾으로 그리고 사회권적 성격 및 장

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필요한 것은 점진적 실현의 의무로 나누어 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당사국 정부의 협약 이행 의무는 언급한 바와 같이 점진적 실현과 즉각적인 조치의 마련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두 가지의 점진적 실현 및 즉각적 실현이 어떻게 본 협약에서 적용되어 이행되는가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에 의하면,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해당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촉진시켜야 할 당사국의 의무는 단순히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삼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모든 장애인에게 평등과 완전한 사회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호혜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이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록 장애인에게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과정에서 절대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된다. 본 조항은 제2항으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 정부에게 조항별로 명시된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특히 교육, 고용, 건강, 재활 등과 같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점진적인 실현에 근거하여 본 협약의 준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원의 활용에 어려움이 없고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영역에서 당사국들이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본 협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실현 원칙이 악용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항은 장애인의 사회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원칙을 전제로 하되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점진적 달성의 의무가 당사국에게 완전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무제한적으로 연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3) 협약의 규정을 보았을 때 각 조항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의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각 조항의 문단마다 분석하여 살펴보아야 하지만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대부분 즉각적 의무에 해당된다.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감되지도 않는다. 즉,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하의 의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의 달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노력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당사국의 본 협약에 대한 고의적인 불이행 또는 회피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반면 생명권, 신체와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정치 참여와 투표권 등과 같은 자유권 분야와 차별분야는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국이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부여된다.

2. 장애의 정의

본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라는 의료적 모델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의 저해’라는 사회적 모델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ICF의 장애분류법 권고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최근의 장애개념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즉,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한 문제, 문제의 해결책 등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속성에서 찾는 ‘개별적 모델’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전의 의료적 모델이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배제 혹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모델보다 의료적인 모델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협약에 담겨있는 장애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의가 제 1조의 목적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장애가 아닌 장애인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장애에 대한 개념을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의조차 “...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개방해 놓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념정의는 전문 (e)호와 함께 이해를 하여야 하는데, 전문 (e)호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개방적 입장과 전문 (e)호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에 상응하여 장애범주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기존 장애개념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장애인의 개념으로 들어오면서 장애인구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향후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의 개념은 위와 같은 형식과 규정으로 인하여 그리고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작성할 일반논평을 통하여 계속하여 그 개념정의가 확대되어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권리협약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차별금지

동 조항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장애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 는 평등을 추구하는 제한적인 수단으로 ‘기회의 평등’ 혹은 ‘절차의 평등’과 가깝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5조에서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직접차별, 합리적 편의 제공,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협약 제2조에서의 장애로 인한 차별의 정의이다. 제2조에서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라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사국의 어떠한 규정이나 조치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효과가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장애로 인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하여 ‘목적과 결과’ 두 가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간접차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를 거부한 경우 차별로 보고 있으며 이는 본 협약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

적 편의 제공, 적극적 우대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차별과 관련하여 제5조 제2항에서는 차별의 다양한 형태를 열거하는 대신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해석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법적 권한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안에 있어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며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언급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권리들을 장애인에게 보다 강화된 형태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합리적 편의 제공은 장애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차별금지의 조항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차별의 영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회권으로 분류되어 점진적으로 실현할 권리로서 보장되던 합리적 편의의 제공이 장애인에게는 더 이상 점진적 실현이 아닌 즉각적인 시정이 요청되는 당사국의 의무로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편의’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하나의 요인으로 즉각적인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등’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거의 모든 일상 또는 사회생활 영역에서 적용되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제공되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는 차별로 간주되며, 이는 즉각적인 조치의무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불균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장애인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건으로서 평등과 차별금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됨으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통해 차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 편의 제공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유사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위해 형식적 평등을 유예하는 조치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부여할 경우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수집단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4. 법적 권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장애인 인권보장에서 지나쳐 갈 수 없는 기본적인고도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능력을 인정해주는 문제는 그동안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유지해 왔던 거래와 공법적 행위를 비롯한 모든 법률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관계 법률에서 그 법적능력을 선언한다 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로 자신의 참된 의사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이 어떻게 법적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항에 표현된 추상적인 ‘법적능력(legal capacity)’이라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의장은 본 협약은 가능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legal capacity’의 해석여부에 있어 법적능력 또는 법적능력의 행사에 대한 개념정의는 개별국가의 법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장은 각국의 다양한 법체계를 본 협약에 표현된 내용 안에서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앞으로도 법적능력의 해석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제적으로, 개별 당사국마다 그 내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본 조항의 취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즉각적인 실현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법적능력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만 인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면이 있다. 특히 법적능력에 대한 표기에 있어 본 협약에서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용어와 동일하게 ‘법적능력’(legal capacity), ‘그 능력을 행사한다(exercise that capacity)’의 두 문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 능력을 법적 권한의 행사가 아닌 법적 권한의 보유로 그 의미를 해석할지 아니면 법적 권리 행사까지 그 법적 능력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만일 법적 권리의 행사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과 같이 일부 국내법과 상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동 조항에 대해 유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권리의 보유로 해석할 경우 정신장애인의 법적능력은 현재와 같이 제한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동 조항에서는 위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입법 또는 조치들이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제도(safeguard)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제도가 장애인의 권리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중립적이며, 장애인의 상황을 반영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법적권한 행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관한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어 동 조항에 언급되어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5. 국내 및 국제모니터링

장애인권리협약은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tools)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크게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협약 제33조에 의한 전담부서(focal points) 설립 및 국내적 독립 기구의 설립이다. 국제적 차원으로는 협약 제3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정부보고서 제출 의무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의 그리고 선택의정서상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통보 (Individual Communication)제도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의 인정이다. 이하에서는 국내적 모니터링, 장애인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개인통보, 위원회의 조사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동 협약은 제33조 제1항4)에서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전담부서(focal point)를 지명하고, 협약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정기구의 설립 혹은 지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항5)에서는 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증진

4) 당사국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해 당사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립 혹은 지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와 관련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전담부서 (focal points)

여기서 의미하는 정부내 전담부서의 지명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이야기한 전담부서(focal points)와 동일한 의미로, 법적·행정적 체제 내에서 동 협상 권리 이행을 위한 지원 및 보장,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내 기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 내 전담부처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팀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상설적 조정기구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 지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조정기구는 아동권리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비추어 보아 상설기구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갖은 상설조정기구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정책 총괄 조정·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⁶⁾ 그러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기구이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독립적 국가기구의 설립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인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

5) 2.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제(framework)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6) 참고로 아동권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의2)

(paris principle)⁷⁾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파리 원칙은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항의 의미를 여타 다른 국제인권조약(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및 인권조약기구(treaty body)의 일반논평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에 이러한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 국가기구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제34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최종견해를 통해서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장애인권리위원회

(1)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장애 및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60개국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최대1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보고서 검토⁸⁾와 선택의정서상의 개인 통보에 대한 심사 및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inquiry)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례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주요인권규약 위원회의 기능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 7개의 국제인권조약은 당사국들이 국내에서 인권을 보호, 증진할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가 비준(ratification), 가입(accession), 계승

7) 이 원칙은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파리원칙 Paris Principles”이라고도 한다.

8) 조약기구가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제출하는 견해와 권고를 공포하며 이를 최종견해라 한다. 최종견해는 당사국의 조약 이행의 긍정적 측면과 당사국이 취해야 할 추가조치를 권고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조약기구들은 구체적이고, 집중적이고, 이행 가능한 최종견해를 제출하고 있으며, 최종견해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각 조약의 문구에 따라 일부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최종논평”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succession) 중 하나의 과정을 통해 조약을 수락하면 그 국가는 해당 조약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비준 자체가 권리의 실제적 이행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인권조약은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들 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약의 국내 이행을 감시한다.⁹⁾

이러한 위원회들은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국내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당사국들로부터 해당 조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고 검토할 권한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들의 발간, 조항의 해석을 제시하는 일반논평 발행, 조약과 관련된 주제 토론 등을 개최한다.

또한 몇몇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의한 조약이행 강화를 위한 다수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이 해당 협약의 개인통보제도를 인정했다면, 해당 위원회는 그 국가에 대항하여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통보를 심사할 수 있으며, 또한 몇몇 위원회는 진상조사(inquiries)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능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보고서 심사,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 및 진상조사(inquiry)는 물론 다른 주요 국제인권조약상의 위원회¹⁰⁾가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일반논평을 통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추상적 조항이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안의 제시, 정

9) 1.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초로 세워진 조약기구로서, 1969년부터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위원회의 모니터링 수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세워졌다. 3.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976년 세워졌다.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82년 이래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해 왔다. 5. 1987년 세워진 고문방지 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한다. 6. 아동권리위원회는 1990년이래로, 아동권리협약 체결국들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군인과 아동 착취에 관한 두개의 선택의정서 이행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 7.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2004년 3월 첫번째 회기를 열었고, 이주노동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10) 참고로 각 인권규약 위원회들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8명, 자유권위원회(HRC): 18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18명,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3명, 고문방지위원회(CAT): 10명, 아동권리위원회(CRC): 18명,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위원회(CMW): 10명이며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되고, 2년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선거로 선출한다.

부보고서 작성지침의 제시 등을 수행할 것이며, 이렇듯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관이다.

다. 정부보고서

(1)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당사국은 해당 조약의 실제적 조항들을 이행할 의무 이외에도, 해당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¹¹⁾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은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최초보고서를 해당 협약 비준 후 2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최소 4년마다 본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동 협약의 각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및 조약상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와 어려움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의 충실한 보고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2) 보고의 목적

정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당사국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보고서 준비과정은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제공한다.

- (a)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 및 국내정책간의 조화를 위해 취해진 국가의 조치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
- (b) 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 (c)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불충분한 점에 대한 확인

11) ‘보고서 검토를 통해 모니터링 한다’는 개념은 1956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인권신장을 위하여 진전된 사항을 기록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및 이후 만들어진 기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도 도입되었다.

- (d) 국제인권조약의 더욱 효과적 이행을 위한 미래의 목표와 필요성 평가
- (e)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설립 및 개발

정부보고서 보고제도는 해당 국가내 인권을 증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달성되었고,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인권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고제도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정부 정책에 대한 공적 심사, 협력과 상호존중의 정신에서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장려·촉진되어야 한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사과정

(i) 정부보고서 제출

당사국은 정부보고서를 유엔 공용어 중 한 언어로 작성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사무국절차를 거친 정부보고서는 해당 조약위원회의 연례 정기 회기들 중 한 회기동안 검토된다.

(ii) 쟁점목록(List of issues) 송부

쟁점목록은 정부보고서 검토가 예정된 회기 이전에 작성되어 보고서 검토대상국에게 이를 송부한다. 쟁점목록은 정부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태를 위원회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가적 정보에 대한 질의서이다. 이 쟁점목록은 정부대표가 받을 질문들에 대한 유용한 예상 질문지로 간주되어 정부대표들은 이에 근거하여 심의를 준비한다.

(iii)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응답

당사국은 쟁점목록에 대한 질문들을 서면형식으로 제출한다. 서면응답은 보고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와 그 보고서가 위원회에 의해 심사되는 날짜 사이의 간격이 큰 경우 필요하다.

(iv)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 입수

일반적으로 여타 주요인권규약상의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이외에도 다른 출처들을 통해 (특히 유엔 기구, 다른 정부간 기구, 국제 혹은 국내 NGO, 학술 기관과 언론) 해당 국가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하기도 하며, 일정한 경우 유엔기구 및 NGO의 구두정보제출을 위해 특정 시간을 할당하기도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보를 입수하리라 예상된다.

(v) 정부보고서 심의

다른 위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는 동안 정부대표가 회기에 참석하도록 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대표가 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조약이행에 대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절차의 목적은 협약을 가능한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에도 관련 정부대표단의 파견될 것으로 생각된다.

(vi) 최종견해

정부보고서 심의 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채택할 것이며, 이는 검토대상국에게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견해는 당사국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인정하고, 각 조항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견해는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vii) 최종견해의 이행

공식적인 보고서 검토 과정은 최종견해를 채택함으로써 완료되나 그 이후에 국가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정부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과 노력을 통해 협약상의 의무가 감독되고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III.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

선택의정서는 크게 개인통보와 위원회의 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그리고 여성차별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

1. 개인통보

가. 개인통보제도의 개요

개인통보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이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UN 해당위원회에 진정(communication)을 하고, UN 해당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해당국가의 국제인권규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 인권협약은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협약이 있으며 현재,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성안 논의 중에 있다. 위 협약 중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의 가입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대한 수락선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동 규약 및 협약 위반에 대하여 각 조약위원회(Treaty Body)에 진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개인통보는 없었으며, 자유권 규약과 관련해서는 7건¹²⁾이 있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2007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12) 손종규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강용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신학철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이정은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윤여범, 최명진의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개인통보제도의 심리 절차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통보(진정)가 접수 되면, 문제의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당사국에 동 사안이통보되며 당사국은 주어진 시한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모든 사건은 공통적으로 “심리적격(admissibility)” 심사와 “본안(merits)”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리적격”이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본안’ 심사를 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말한다. “본안심사”란 장애인권리협약이 정한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당사국이 진정에 대한 항변서(answers)를 제출하면, 진정인에게 항변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준다. 당사국이 진정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정 제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이 경우 당사국에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래도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출자의 본래 진정서를 기초로 결정을 내린다.

(1) 통보의 접수

일반적으로는 관련 인권 조약들에 인권침해에 관한 통보(진정)를 제출하는 공식적인 시한은 없다.¹³⁾ 그러나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면 즉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하면, 진정이 각하될 수도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통보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리절차가 개시된다. 이러한 통보서에는 아래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통보가 접수되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의 심리적격에 대한 판단과 본안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시작하며, 통보의 대상국에게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진술서를 6개월내에 제출할 것을 통보한다. 진술서가 제출되면 통보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위원회는 통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13)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경우 국내관계기관의 최종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정을 제출해야 한다.

(2) 심리적격의 검토

심리적격이란 개인통보 자체가 수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본안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초기 단계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이다. 심리적격을 심사할 때 아래에서 언급할 심리적격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본안심리로 갈 수 있다.

접수된 통보에 대하여 심리적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정인(통보자) 또는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3) 본안심리

심리적격이 인정되면 사건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본안심리가 개시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진정인과 회원국이 제출한 서면 정보를 기초로 심사한다.¹⁴⁾ 보통 심리과정에서 통보자나 당사국의 정보제공은 한번에 그치지 않으며, 여러 차례 추가정보가 요구됨이 일반적이다.

(4) 위원회의 견해 제시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진정인과 당사국에 동시에 통지된다.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의 위원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달랐을 경우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이유가 달랐던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밝히는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권고에 의거하여 취한 후속 조치들에 관한 세부정보를 담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에 협약이 정하는 권리들의 전반적인 준수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직접 또는 차기에 위원회에 제출할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잠정조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통보를 심사하기 전에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14) 당사자들로부터 구두의 진술을 받거나 오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증거 (오디오 카세트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접수하지 않는다.

다. 즉, 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하기 전 어떠한 단계에서도 주장된 권리 침해의 피해 자들에 발생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잠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진정인이 위원회의 잠정조치 요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이든,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러한 당사국에 대한 잠정조치의 요청이 통보의 심리가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¹⁵⁾

다. 개인통보제도의 심리적격 요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안심리가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심리 적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심리적격에 관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 한 후, 진정을 제기하여야 한다.

(1) 통보의 주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¹⁶⁾는 “당사국이 협약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하여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어야 하고 둘째, 통보(진정)제출권자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혹은 이들의 대리인이어야 하며, 셋째, 피해자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i) 당사국 관할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는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이 통보의 주체

15)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

16) 선택의정서 제1조 : 1.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해 협약상 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이란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뿐만이 아니라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포함한다.

(ii) 인적 범위

a)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혹은 이들의 대리인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단 역시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집단’이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피해자 이어야 한다. 만약 통보를 제출한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각하하고 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¹⁷⁾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을 대신하여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3자가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이러한 서면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나 동의 없는 진정 제출에 대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진정서의 제출에 있어 진정서가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될 필요는 없다.

b) 피해자

피해자라는 개념은 당사국의 작위 내지 부작위로 인하여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실제로 피해자인가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진정인은 다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진정의 허용성 판단 단계에 있어서 진정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느냐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피해자임을 주장함에 있어 이미 권리를 침해했거나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의 법률, 정책, 관행,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행의 정당성에 추상적으로 도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리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⁸⁾

17) Communication No. 35/1978, Aumeerudy-Cziffra and Nineteen Other Mauritian Women v. Mauritius (Human Rights Committee)

이 경우 피해자가 통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만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피해자의 대리인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의 경우이다. 잠재적 피해자란 동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범규범이 존재하나 아직 적용되지 않아 현실적인 침해는 없지만 침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침해의 예정만을 가지고는 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다. 즉, 현실적인 그리고 특정의 피해자 없이 단순히 국내법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침해가 예정된다는 식의 진정은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권리침해를 당하기 이전에 구제를 받지 못하면 사후에는 당해 조치에 대한 구제를 받기가 심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불임수술이나 낙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이다.

(2) 시간적 범위

원칙적으로 통보(진정)의 대상이 동 의정서의 발효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심리하지 않으나, 발효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다.¹⁹⁾

(i) 선택의정서 발효 이후

선택의정서는 가입한 후 1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당사국에 적용되므로 가입 후 13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통보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진정인에 대한 사법절차가 선택의정서 가입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중국적 관

18)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19) 선택의정서 제2조 제(f)항: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결이 선택의정서 이후에 내려진 경우, 권리침해는 최종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일을 기준으로 그 수락여부가 결정된다.²⁰⁾

(ii) 계속적 침해상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발효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리가 가능하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일 이후 까지 지속된다는 의미는 과거의 침해 행위(선택의정서 발효 전)가 구제 되지 않고 그 침해 상태가 계속해서 선택의정서 발효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계속적 침해상태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이러한 침해상태의 계속과 함께 침해상태를 야기한 범규범의 계속적 적용을 통한 협약 위반의 결과가 선택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3)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동 의정서 제2조 (d)항²¹⁾은 개인통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진정인에게는 국내구제절차 완료의 의무를 그리고 당사국에게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부여된 국내구제절차 완료 의무 역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 구제의 대상

국내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구제란 사법적 성격의 구제에 한정되며 구제의 대상은 침해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일 것이다.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란 당해 권리에 대한 실질적 위반은 물론이며, 협약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효

20) Communication No. 628/1995, Tae Hoon Park v.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21) 선택의정서 제2조 (d)항: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구제 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적·실질적 보호가 없는 경우에도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ii) 국내적 구제절차의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보아 국내구제절차 완료에 있어 어느 법원까지를 완료해야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을 최종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최종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²²⁾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을 보충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효과적 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단한 결정례가 있다면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성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구제절차가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일반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최종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i) 효과적 구제 수단의 존재

효과적 구제수단이란 구제절차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진정한 입장에서 구제절차가 합리적 수준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구제절차의 효율성이나 승소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절차를 밟아봐야 전혀 성공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iv) 불합리한 지연

국내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불합리한 지연이란 지연기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권리구제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소송절차가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면 피해자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지연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한다.

22) 제68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v) 입증책임

제출된 개인통보에 관하여 국내적 구제 미완료를 주장하려면, 당사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아직까지 다하지 않은 국내구제절차가 존재함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밟지 않은 국내구제절차가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고 진정한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당사국은 남은 절차가 여전히 이용가능하며 실효적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 기타 요건 및 제한

(i) 협약 규정과의 양립성

선택의정서는 제2조 (b)항에서 개인통보가 협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협약상 보호되지 못하는 권리나 침해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즉, 침해의 주장은 협약이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진정은 법률용어로 인정 불가능한 사항적 관할권(*inadmissible ratione materiae*)이 된다.²³⁾ 둘째,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²⁴⁾이다.

(ii) 익명의 통보 금지

개인통보의 심리에 있어서 통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일방당사자이므로 신원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에 의하여 통보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하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나 통보자의 신원이 밝혀져야만 당사국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혹은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24)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에서 있었다. 2005년 7월 20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정은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통보번호 1119/2002)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유보한 제22조에 관하여 심리한 후 대한민국이 규약위반을 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 규약 제22조에 대하여 유보하였음을 원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ii) 통보권의 남용금지

통보권의 남용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미 기각된 사안을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라든지 해당 진정건이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혹은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각하하기도 한다.²⁵⁾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다른 조약위원회의 개인통보 관행에 비추어 보아 통보권 남용을 근거로 수락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iv) 근거 없는 통보

통보자가 최소한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내용이 명백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이전에 통보의 수락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시킬 수 있다. 즉,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주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증거의 제출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는다.

라. 본안 심리

위에서 언급한 심리적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및 의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본안심리가 행하여진다. 본안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주장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과 어떠한 기준으로 제출된 사안과 협약과의 위반을 판단하는 가이다.

(1) 입증책임

본안심리에 있어 제출된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국내 소송에서처럼 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이 주장되어 주장자에게 주장한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된다면, 거의 모든 입증책임을 통보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보되는 사건의 특성상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며,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국이 명백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개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25)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부여한다.²⁶⁾

(2) 위반의 판단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단지 협약의 내용에만 구속될 뿐이며, 다른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이 추상적인 것이 많으므로 실제 통보 내용의 협약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구체적 권리 의무를 제1조에서 제30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조항의 규범성과 권리 및 의무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작성할 일반논평을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 및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개인정보의 법적 효력

개인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와 직접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규약 위반 판정이 있으면 이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각 인권 위원회의 결론에 대하여 view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준비교섭문서나 기타 사정을 보았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결여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첫째, 위원회의 견해는 위반문제에 대한 판단과 함께 당해 대상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 규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견해는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 규약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법적 효력을 협약하에서 찾아야 되며, 둘째,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선택의정서라는 조약의 실효성을 심대히 저해시키는 해석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전체의 규범적 효력을 무화시키는 것으로써 이는 조약해석의 원칙 중 하나인 실효성의 원칙²⁷⁾에 반함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6)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정보 사건을 들 수 있다. Communication No. 131/1982, N. G. v. Uruguay, Communication No. 147/1983, Gilboa v. Uruguay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정보제도, pp.105-106.)

실사 위원회의 견해가 정식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 및 법적 영향력이 갖는 함의를 무시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며,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동 규약을 존중 혹은 고려할 최소한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진지한 고려조차 하지 않는 행위는 이러한 의무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사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²⁸⁾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reliable information)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우선 당사국에게 정보를 확인하는데 협조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당사국의 의견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참조해서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 이상의 위원들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행하여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국가의 주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필요하다. 조사 후에는 조사의 결과에 코멘트와 권고문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국은 협조하도록 요청된다.

조사가 끝난 후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즉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직권조사의 결과

-
- 27) 조약과 관련하여 하나의 해석은 당해 조약이 적절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다른 해석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 및 조약의 목적과 취지는 전자의 해석의 채택을 요구한다.
- 28)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1.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가 가능한 모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에로부터 조사결과·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시행된 조치를 정기적인 협약이행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사국이 조사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회피조항²⁹⁾을 두고 있어, 각 당사국은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 가입할 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IV.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1.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가.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

(1) 직접적용가능성 여부의 문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도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대법원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직접 적용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조약이라 하더라도 조약 또는 조약의 조항에 따라 직접 집행(직접 적용) 될 수 있는 경우와 별도의 추가입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조약의 자기집행성 또는 직접적용가능성의 문제이다.

자기집행성의 판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남아 있음. 대체적으로 자기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1) 조약이 그 시행과 효력에 있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조약이 명백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

29)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8조: 각 당사국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 의정서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 시 선언할 수 있다.

위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조약이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 위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직접적용가능성

장애인권리협약을 살펴보게 되면 장애인권리협약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사국은 어떠한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무엇 무엇을 촉진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무엇을 보장해야한다.’ ‘당사국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등으로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이 직접 적용될 있는가? 즉, 개인이 동 협약상의 조항들을 근거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 법원은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입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된다.

(3) 헌법적 해석원리로써 장애인권리협약

자기 집행성과의 문제와는 별도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헌법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법과 체결된 조약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국내법과 조약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권조약은 통상의 조약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조약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제법상의 인권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통상의 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기본권이 헌법으로서 보호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에게 근본적인 중요한 자유와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려는 기본적 권리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적 차원의 성질을 가진 법규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게

된다면 1) 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 2)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존중되어야 할 해석적 지침 3) 국제인권조약이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이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 제6조 1항이 규정한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위헌이라는 견해로 정리될 수 있음.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권조약의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 헌법의 해석원리의 하나로써 헌법을 해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자기집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게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에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약으로서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됨으로 동 협약과 불일치하는 당해 법률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제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제언

(1) 국가의 의무에 대한 강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이 헌법의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국가에게 동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 협약의 조항하나하나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조항마다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과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국가에게 강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무는 존중의 의무(obligation to respect),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이행의 의무(obligation to fulfill)로 나눌 수 있다.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보호의 의무는 국가에게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를 강제하는 의무이다. 이행의 의무는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인 실현에 목표를 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한다.

이중 존중의 의무와 보호의 의무에 해당되는 규정들은 여타 재정적 지원이나 자

원배분의 문제없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의무이며, 이행의 의무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지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함.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의무의 이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향유를 충족시킬 최소한의 핵심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존중·보호의 의무와 이행의 의무 중 최소핵심의무에 해당하는 규정은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들이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즉각적인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이 되는 것이며, 국내법이 규약과 일치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협약 위반으로서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의무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각 조항마다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에게 이를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용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자기집행성 및 헌법적 해석지침으로서의 성격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인권협약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주요 인권조약의 경우 조약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써 인하여 국제적인 압력과 실질적인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협약도 이와 같은 조약위원회가 있어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초의 보고서는 2년이내에 그리고 그 후로는 5년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여타 인권조약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조약위원회의 정부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는 계속하여 민간단체 및 국내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계속하여 언급됨으로써 국내적으로 동 협약의 이행에 대한 국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동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가. 전반적 평가

장애인권리협약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인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장애

인을 위한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이다. 그러므로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부분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나 그중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은 아마도 사회권일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4조 2항 ‘국가의 일반 의무’에서 사회권과 관련하여 가용자원이 요구되는 경우, 점진적(progressively)인 실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을 통하여 유추하여 보았을 때, 장애인권리협약의 성격은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그리고 가용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진적 실현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령에 많은 부분이 위임되어 있어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권고 및 시정명령, 형벌과 벌금 등을 통하여 차별금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은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 및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통하여 규범력을 행사하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위와 같은 강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 항목별 비교

(1) 차별의 개념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분야별로 장애인과 관련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차별에 관해서는 동 협약 제2조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범주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로 나누고 있어 그 대상과 범위는 거의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장애의 개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의 개념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두 가지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3) 합리적 편의와 정당한 편의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합리적 편의’를 상황별 필요한 곳에 과도한 부담 없이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당한 편의’라 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정당한 사유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과 함께 진정직업자격 또는 진정자격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은 정당한 편의는 위에서 이야기한 정당한 사유와 함께 이해하여야 하며, 결국 정당한 편의는 과도한 부담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과 법이 모두 과도한 부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과도한 부담’이란 용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도한 부담과 유사한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4) 대상 영역

대상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은 거의 유사한 영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두 6개의 영역이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대상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협약과 마찬가지로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하고 있으며,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적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차법과 유사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생명권(제10조), 위험 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제11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제14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제19조), 사생활 존중(제22조), 재활(제26조), 적절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조) 등의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위 장차법안은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협약은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이행시기 및 방법

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3월 30일 서명, 비준을 위해 개방되며 20개국의 비준 및 가입이 이루어진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4월 4일 대통령의 서명, 4월 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됨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08년 4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역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적 측면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목적과 방향이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평면이 존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외에도 전반적인 장애인 인권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법 성격을 띠고 있으나, 주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 정책 전반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벌금 및 징역이 부과한다. 징역의 부과는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이 있음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다보면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전반의 존엄성 및 사회참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간의 합의이며, 점진적 실현이 당사국의 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장애인권리협약 역시 정책뿐만이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과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에 관한 내용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건강에 관한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농촌지역에서의 보건서비스, 의료전문가와 공공 및 민간 보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보급 및 훈련을 통한 인식의 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장애인의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6조 재활의 경우에도 지역 공동체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직원을 위한 훈련 및 훈련의 개발, 재활과 관련있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 및 보장구에 대한 장려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정책의 방향 제시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권의 증진에 그 역할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핵심 법규범으로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의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통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우리가 인권의 침해나 위반을 이야기 할 때는 관련된 국가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번에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3월 30일 서명 개방된 장애인권리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

제협약'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 평가와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현재까지의 인권조약에서 규정하였던 인간의 존엄에 기반을 둔 보편적 규범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범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조약으로 성안된 것이다.

본 협약은 여타의 국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며 각국의 비준 이후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이행의 의무를 갖게 된다. 각 당사국 정부의 협약 이행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의무로 대별하여 볼 수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러한 적극적 의무와 점진적 실현의 의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두 가지의 점진적 실현 및 즉각적 실현이 어떻게 본 협약에서 적용되어 이행되는가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조약을 가입함에 앞서 조약과 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거나 개정이 어려울 시 조약상의 조항들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에 보여준 열의와 성과를 감안할 때 유보를 하기 보다는 상치되는 국내법에 대한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협약의 내용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시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여 국내법에 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 혹은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상치되는 국내 법률들을 개정 혹은 폐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 지침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것이며,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써 인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

곽 숙 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팀장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

2007. 4.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I 장애인의 정책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 II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III 장애인정책을 더욱 보완·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 IV 앞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장애인의 정책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1.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1차 장애범주 확대('00.1)
 -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 ◎ 2차 장애범주 확대('03.7)
 -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2. 장애인의 삶의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 취업차별 경험(42%), 교통수단의 어려움(68%), 보도장애물 부상경험(53%)
- 도움 필요 중증장애인 90.9%가 부모등 가족의 도움

5

3. 참여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이후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중 중증 및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
교육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 ● 초·중학교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아 무상교육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장애인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징수 위주 소극적 의무고용제도 ● 단편적·일률적 고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의무고용제도 개선 ●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접근 및 장애인 이동 지원 미흡 ● 재활위주 장애인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접근 기회 확대 이동권 적극적 보호 ● 생활체육·문화복지영역으로 확대

6

II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 말씀(06.4.29)

- <맨발의 기봉이> 관람시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제1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06.6.28)

-3개 영역 13개 세부과제 추진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1. 장애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9

2.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가. 더 많은 장애인이 더 많은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통합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07. 3. 30)

- 교육, 고용 등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고자 제정
- 권리협약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조항 등 채택에 기여
-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규약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한 비준 필요



다.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 ◎ 1급 중증장애인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 제공

* 16천명(대상인구의 10% 충족), 월 평균 45시간

* 금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확대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이동 및 사회활동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 • 옷 갈아입기 • 식사보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 양육보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도우미 • 직장·사회참여지원 등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라. 장애인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부문 고용률



민간부문 고용률



• 삼성,현대,LG 등 142개 기업 “고용증진협약” 체결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300인 이상 → 50인 이상)

15

마. 장애인이 더 많은 문화·정보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영화제 관람객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16

바.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지정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 여성장애인 자활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장애아 통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7

Ⅲ 장애인정책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1 장애인 정책 시스템 개선
- 2 장애인 교육 보장
-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4 장애인 일자리 확충

대통령 말씀 ('06.6.28)

-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국정과제회의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제도적 여건 정비
 - 장애등급 재분류를 통한 장애인고용 확대 추진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 판정 및 등록체계 등 시스템 개편
-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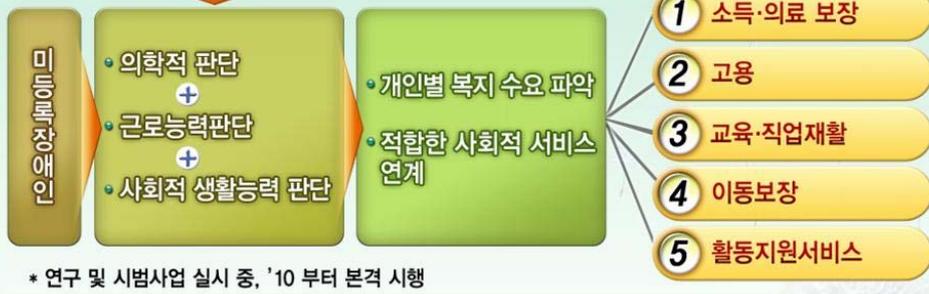
19

1. 장애인 정책 시스템 개선

1. 장애인 정책 시스템 개선

가. 장애인 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장애인 판정등록체계(현행)
- 의학적 판단



* 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중, '10 부터 본격 시행

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20

보건복지부 (2차)

나.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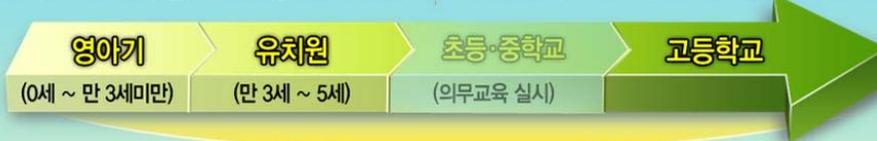
- ◎ **활동보조인 사업 확대('07. 5)**
 ('07, 16천명 → '10, 22천명)
 - 바우처 사용,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기능
 * 향후 사회복지, 자원봉사도 활용
- ◎ **성년후견제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
 - 정신 장애인에게 계약등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서비스
- ◎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6대 권역별 의료 재활센터 건립지원('06~'09)
 -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확충('06, 45개소 → '11, 234개소)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체계 마련 ('10)**

21

보건복지부 (2차)

2. 장애인 교육 보장

가. 장애 아동은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을 통한 장애인의 교육권 완전 보장

'07	무상교육 시범학교 운영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및 의무교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08		기 초 조 사 실 시
'09		교사 배치 및 학급 증설 계획 수립
'10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의 무 교 육 연 차 별 실 시

※ 특수교육 진흥법 국회 계류중('07. 4 현재)

22

교육부 (1,2차)

나. 보다 더 쉽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우미를 지원하여 학습보조 실시

[도우미 지원계획]



*대학 장애인학생 4,045명 중
1~3급 장애인학생은 2,721명

대학 장애인학생 특별전형 입학현황



07년 장애인학생 특별전형 실시대학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가. 여성장애인은 차별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모자보건서비스 강화('07~'09)

- 임신부·중증장애인에게 정기적 진단, 상담 제공
- 산전·산후도우미 지원
- 산부인과 진료시 의료수가 가산 적용

사회교육지원

- 문자해독교육 등 기초학습교육, 사회교육 실시 ('07, 4개 시도 → '08, 16개 시도)

여성장애인 기본권 강화

- 임신·출산 관련 활동보조인 지원가능('07.3 장애인 복지법 개정)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07, 70개 지역)
- 「여성장애인 리더 DB」 구축('07)

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타기 편리한 저상버스 확충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확대('02~)
 - 철도역사에 장애인 우선창구 설치('06, 53개역 → '07, 90개역)
 - 공항내 저상셔틀버스 도입 (16대, 보안검색 편의 제공)

- 보행환경 개선('05~)
 - 국도주변 보도설치 및 정비
 - 교통시설 정비추진 ('07, 5곳)

-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07.9)
 - 교통약자가 이동성에 불편이 없는 시설물·거리 등



다.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정보화 수준을 '10년까지 일반국민의 86% 수준으로 제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10년까지 48천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
('10년까지 40만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라.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생활하게 됩니다

장애인 주거·고용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주거기능 중심의 소규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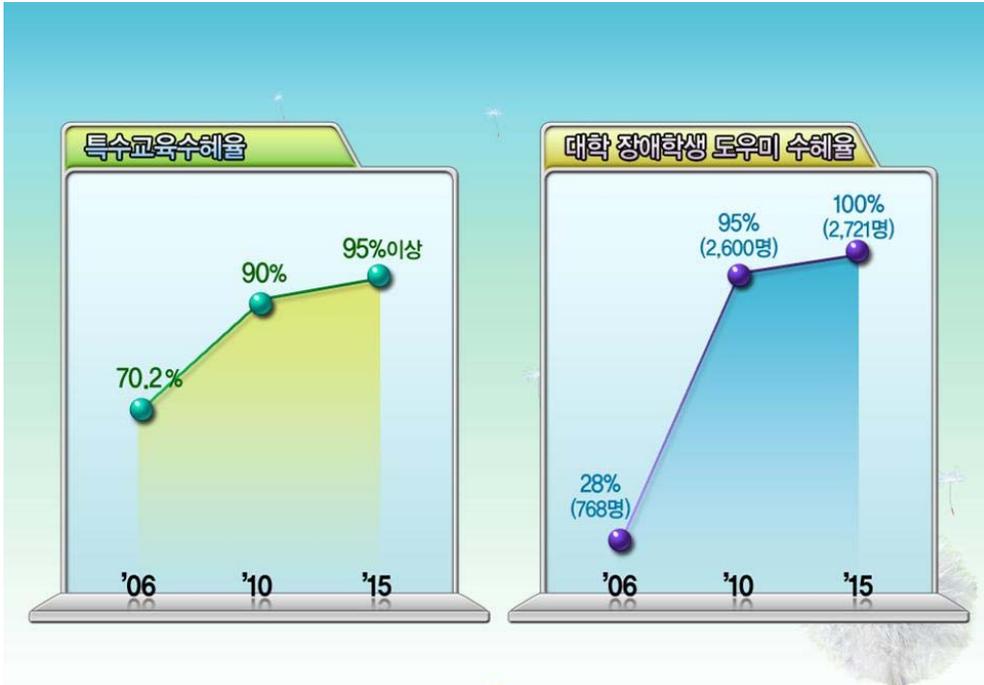
그룹홈 확충, 전체 공동주택 공급의 3%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통합 생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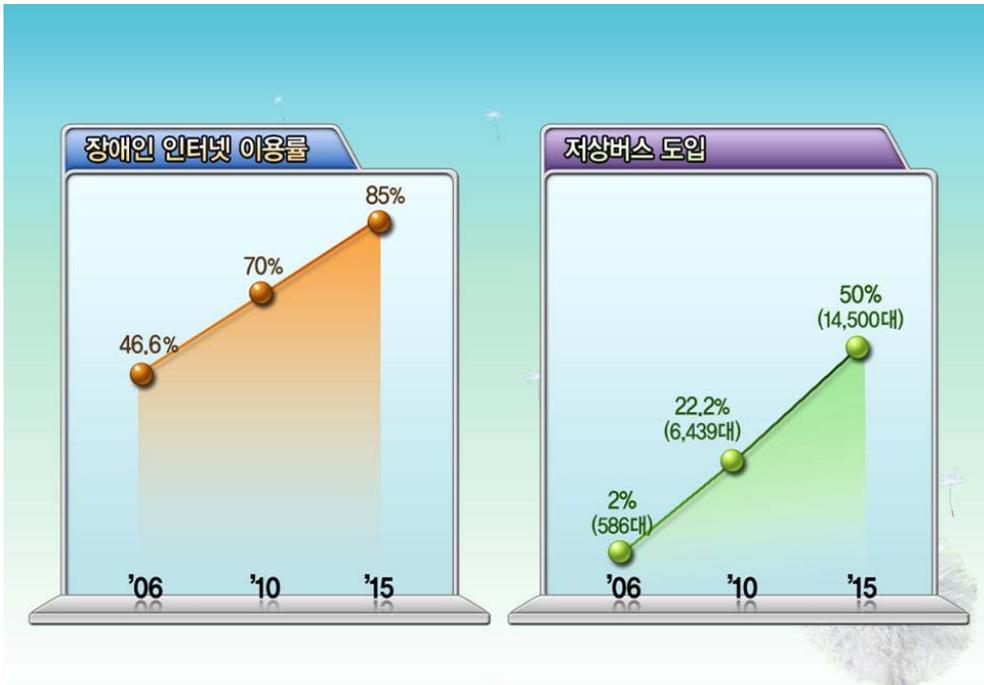
IV 앞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1



32

장애인이 맘껏 일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 장애인 고용정책 -



참여정부의 주요성과

의무고용 범위·직종 확대

공무원 채용시 우대

대기업 고용증진협약 체결

기업 연계형 맞춤형훈련제 도입

의무고용률, 30대 기업 장애 근로자 수, 취업장애인수 지속 증가



한 계

중증 장애인 취업 저조, 고용·복지간 연계 미흡

향후 정책 방향



1. 장애정도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2.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대기업과 고용증진협약 체결 ('06)142개소 → ('07)170
- 중견·대기업 인턴고용 확대 ('07)1,100명 → ('1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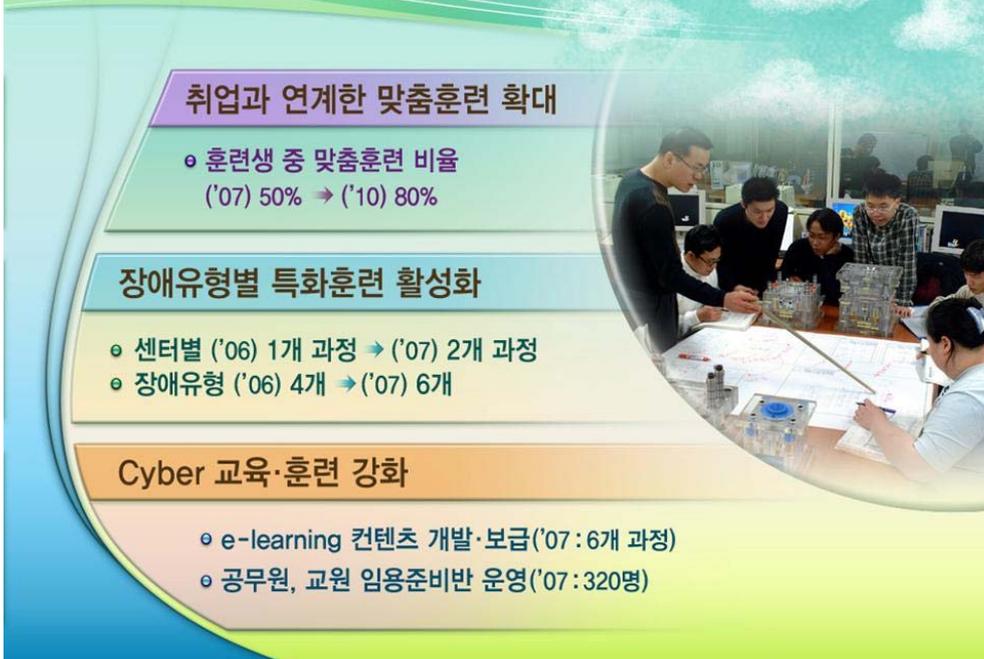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 “해바라기 마을(가칭)” 설립
 - * 생산·훈련·복지시설 복합단지
 - * 대기업·지자체 협력 1개소 시범 설립 추진('07)

창업 및 영업장소 지원

-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07:30억원)
- 영업장소 전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07:100억원)

3.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갖게 됩니다



취업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 확대

- 훈련생 중 맞춤형 훈련 비율 ('07) 50% → ('10) 80%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활성화

- 센터별 ('06) 1개 과정 → ('07) 2개 과정
- 장애유형 ('06) 4개 → ('07) 6개

Cyber 교육·훈련 강화

- e-learning 콘텐츠 개발·보급('07:6개 과정)
- 공무원, 교원 임용준비반 운영('07:320명)

4.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상용·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매년 3,000 여명)

직장적응 지원

- 수화통역사·작업지도원 등 배치('07: 700개 사업장)
- 출퇴근 차량 구입비 용자지원('07: 60억원)

장애인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07: 120억원)

- 작업 설비·작업보조기기 지원
- 점자프린터기 등 재택근로자 작업장비 지원

5. 고용과 복지의 연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시·군·구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간 연계 구축

- '07 수원지역 시범 실시 → '08 이후 단계적 확대



5. 고용과 복지의 연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지역내 장애인고용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고용촉진네트워크 협약 체결('07:800개소)



장애인 고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 2 부

전문가 토론

- 토론1. 김광이 부위원장 (장추련 법제위원회)
-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토론문
김정열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토론3. 사회적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남찬섭 과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토론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적용과 이행을
위한 과제
배용호 정책실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 토론5. 정영선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 토론6. 홍관표 서기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토론 1



토론 1

김 광 이
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수요자 중심이라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김 광 이

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예산 증가?

- 장애인예산 07년도 전체예산 0.28%
(2002년 대비 일반예산 43%증가, 장애인예산 115% 증가)
- OECD 가입 장애인 평균 2.73%(GDP 대비)
 - ▶ 예산 증가 수치는 비약이 있었으나, 2006년 OECD 국가 중 한국은 총 사회복지 지출비용이 30개국 중 30위, 근로소득 지원과 공적 의료 지출비는 30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임.
 - ▶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정책 검토와 시행이 늦어짐에 미안하다고 한 바 있음. 증가수치는 양적인 결과이고, 장애인의 체감은 여전히 계층화를 우려하고 있음.

□ 활동보조 서비스 - 목적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 1급 중증장애인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 제공
 - ▶ 추가배정에 대해서는 향후 신청추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회를 누리는 것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만 자립을

* 본 토론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 김철환, 배용호, 이문희,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

- ▶ 교육, 훈련, 문화 등 참여 기회, 노동가능성에의 접근 등 생활 전반 기회확보를 자립적으로 도모하기에는 턱없는 시간(교육받기 위해 외출준비단계부터 산정 하루 6시간×주 5일×한 달 = 최소 120시간)

○ **과연 사업중계기관이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과 상해보험을 책임질 여건이 되는가.**

- ▶ 사업기관을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전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 사업기관에 시간당 7000원을 지원하면서 활동보조비 5,000원~6,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1,000원과 자부담(자부담 상한액 2만원~4만원)을 견어서 이들 보험을 사업중계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 이는 현실상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계기관 모두에게 안정된 보장대책이 될 수 없어서, 결국 국가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조치임.

□ 고용

○ **정부부분 고용율(05년2.25%)/ 민간부분 고용율(1.49%)**

- ▶ 장애인의 노동은 상당히 중대하고 상세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부문임.
-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중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음에도 항상 그렇듯이 정부가 단순 수치의 성과만 발표하는 것은 줍이 빠진 껍질 같아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노동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지원대책 발표임.
- ▶ 고용율 뿐만 아니라 고용상태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개념 재정립**

- ▶ 이미 세계는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인류는 이 정보와 문화의 영역을 더욱 넓혀 갈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직업적 중증의 개념정리를 다시 하여야 함.
- ▶ 또한 보편성과 함께 장애인직업의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 함. 시각장애인안마의 문제에서 보듯이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특정영

역의 장애인들의 경우는 통합고용이 아닌 특수직종개발을 통한 통합고용형태의 모델들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 ▶ 해바라기 마을 설립 등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자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고용정책에 있어 보편성에 무게를 두어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종개발을 통한 통합고용형태를 지하는 대책이 먼저 계획되어야 함.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 작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이 발표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발표되었음.
- ▶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경우 수급권을 포기해야 함. 전일 근무는 급여와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나, 파트타임 근무인 경우 수급권을 포기하면 생활수준은 달라질 것이 없고, 국가의 비용만 줄이겠다는 의도에 불과할 수 있음.
- ▶ 근로 유지를 위한 물리적 정신적 환경과,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안전한 이동지원

- ▶ 대상시설 가운데 철도, 도시철도, KTX는 포함되어 있으나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음. 경전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언급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 지하철역사의 계획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누락되어 있음. 시각장애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승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 지하철역사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높이차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 ▶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단일요금제로 운영하고, 이용시간의 경우도 24시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함.

- ▶ 저상버스 노선이 운행되는 버스정류소에는 정류소 버스노선표에 노선번호와 함께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자가운전 등의 지원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있어서 경전철과 공항철도 요금의 할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할 것임.

□ 재활보조기기

- ▶ 보조기구와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국내 재활보조기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지만 판로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음.
- ▶ 장애인 용품을 만들면 제작 용품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와 기기의 효율성을 따지기 앞서 정부나 장애인단체의 로비를 통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 ▶ 국내 재활보조기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없었기 때문임. 재활보조기기의 문제는 단순히 용품의 문제를 떠나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중요한 한 분야이기 때문에 보급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맞도록 기술지원, 제작업체 보존 등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화와 정보 접근

- ▶ 문화와 정보정책을 무료관람이나 중고컴퓨터보급, 인터넷 이용율만 가지고 문화정보향유순을 대변할 수 없고, 질적인 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예를 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질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정책만 세웠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 인터넷 이용율의 효율성을 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용한 만큼 유용한 정

보를 습득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유하면서, 자신의 욕구에 맞도록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함.

- ▶ 또한 장애인의 정보화를 위하여서는 인터넷이용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를 하기 어려운 정보(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함. 즉 일반생활환경에 관한 정보접근 정책이 맞물려야 함.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정책과 보편적인 정보접근정책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완전한 정보접근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수화의 보편적인 언어로서 인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수화활용지원대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통합기반은 시행령의 내용을 통해 마련될 것임.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만으로 성과 말하기 전에 진지하게는 시행령을 통하여 보다 현 참여정부의 태도가 드러나게 될 것임.
 - ▶ 현재 장추련을 배제하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복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령 준비를 위한 정부합동기획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 이는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에 스민 역사성을 무시하고, 과거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결집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임.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시행령의 실질적 내용을 보다 적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조속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
 - ▶ 현재 계류중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 장애학생 무상교육 등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법률이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음.
 - ▶ 중증장애인 교육과 노동을 위한 복합단지 건립의 실효성과 이념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장애여성의 사회권을 위한 집중된 노력이 필요함.

- ▶ 현재까지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은 모성권에 초점이 있음.
- ▶ 그 외에 2차 장애인종합지원대책에는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역형 맞춤 프로그램”이라는 막연한 내용과, 성인장애여성에게 문자해독교육 등의 기초학습 및 사회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애여성 리더 DB구축 정도만 발표하고 있음.
- ▶ 장애여성 리더 DB 구축 후 멘토링 체계 마련을 어떤 절차와 내용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아무도 채우지 않는 빈 예쁜 편지지로만 남을 것이 우려됨.
- ▶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원 대책도 필요하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정책 속에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모든 계획 속에 성주류와 장애주류적 시행이 이루어져야 함.

□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제도시스템이 필요함

- ▶ 현재 정책마련에 있어서 설계가 끝난 후 단기간 내에 장애계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이미 디자인이 끝나고 수정이 어려운 시점에서의 의견수렴은 형식행위임.
- ▶ 장애인들의 참여가 정책설계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함.
- ▶ 정책 시행 후에도 그 결과를 단순수치로 보고하는 정도에 그침. 정책 시행 결과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 등으로 해당 대상들의 복지체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준을 자세하게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토론편

김 정 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토론편

김 정 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장차법이 드디어 제정되다.

지난 20여 년 전만해도 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주장하면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인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했다. 10년이 지난 이후 정부는 1998년 장애인 인권헌장이 국무회의를 통해 선포 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이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제1차 장애인발전5개년계획). 국민의 정부 평가 시 장애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처방은 미약했다. 그리고 10년 후 2007년 국제장애인인권협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했고, 청와대에서 장애인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이정도면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차별금지를 통한 장애인정책을 국가차원에서 다룬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장차법인가

토론자는 지난 20여년 넘게 장애인현장에서 활동했다. 특히 장애로 인해 생기는 여러 형태의 차별상황에 늘 직면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차별문제가 생기면 장애인단체의 압력이나 인터넷 덕분에 사회 압력이 커져 공공기관의 경우 쉽게 사과를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정책적인 문제가 걸리거나 사인(私人)

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문제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았다는 차별이 한낱 주장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에 근거가 있거나 판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차별에 따른 권리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라 관련 부처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적이 있었다. 상고심에서까지 기각되었다. 기각사유는 법상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따른 조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후 의무고용제도가 국가에 대해서도 강제조항으로 개정됨). 장애인복지법에도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아 차별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고 해도 차별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차별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장애차별이 무엇인지 법적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이유다.

주제발제자의 장차법제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동의 한다

주제발제자의 장차법 시행이후 과제 즉 시행령제정과정에서의 민간단위의 참여, 장차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 재·개정, 장애차별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의식변화 노력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주제발제자의 일반적인 상황인식과 견해에 동의 한다.

몇 가지 첨언하는 것으로 통해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법이 원활하게 작동되려면

현재 장차법은 복지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법무부는 시정명령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여러 부처와 국가기

관이 협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전 부처의 노력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이나 우리나라 법체계상에서의 행정부의 역할을 볼 때 법 집행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승진 상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되고,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차별이라고 판정되면 피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만일 차별행위자가 행정소송을 내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특성으로 볼 때 부처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장애인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칫 책임을 미뤄버린다면 피해자는 차별 받는 장애인일 것이다.

장차법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

장차법이 장애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관련법이 십 수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치 앞도 생각하지 못 할 정도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게 차별금지법 운운하면 당장에 등 따시게 살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가정에서, 문화·체육생활에 있어서 각종 차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장차법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이 법에서 어찌할 수 없다. 일이 없는 장애인에게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 문화시설 이용상의 차별은 그림의 떡이다.

장차법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사회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차별만 인지하고 해결책은 없다면

“장애 가진 사람들이 차별 당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어, 당사자조차도 무엇이 차별인지 인지하지 못하며, 또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근거나 관계 기관조차 없는 우리의 상황이 결국 차별에 맞서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권리의식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차별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사자의 차별무감각성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차별제거의 결과 보통의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있다. 장차법은 바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낼 수 있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이참에 장애인 차별소지 법령 개선해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42조, 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 일정한 직종을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장차법 23조 적용제외)
- 수난구호법 제7조, 시행령 제3조(수난구호업무 제외자) :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애등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자
- 행형법 제32조(교육)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 예외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 현재와 같이 일괄적 적용 방식이 정당한지 논의(감액적용 방식 고려)
- 상법 제732조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 이 조항이 합리적 배려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큼
-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8조,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제7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3조(방청의 금지), 선원법 제76조(안전 및 위생), 유선및
도선사업법 제12조,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물 출입에 대한 제한 조
항으로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도 보여짐.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에 있어 결격사유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 이 밖에도 조리
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등 자격제한규정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보여짐
- 형사절차 상의 장애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수사상,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리한 환경 개선 필요함.

남겨진 과제들

장차법 제정운동진영이 요구했던 주요 내용이 입법안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 독립기구, 장애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입증책임의 부분도
입 등의 주요쟁점이 대부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예산이 수반 될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했다. 과도한 사회적인 부담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나 경제계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다. 예를 들면 의
무고용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장차법까지 시행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
이라고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의 정의와의 관계,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와
관계설정, 장차법 부칙에 시행시기를 1년 후로 하고 있어 장차법이 가지고 있는 무
계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생각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인력투여와 준비해야할 일들이 많다.

장차법이 장애인에게 주는 의미

장차법 제정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욕구가 해결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완해줄 적극적인 조치가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인의 경우는 ‘조건의 평등’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해서 장차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계에서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부담 만이 문제가 된다면 좀 더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일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것이 힘이 들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나 사회, 국가 모두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이러한 부담이 기업에게도 고스란히 넘어 갈 것이다.

장차법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 줄 것이고 이로 인해 평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장차 장차법을 둘러싼 관련자들은 장차법이 장애인에 있어서는 삶의 존재적인 의미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회적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남 찬 섭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적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남 찬 섭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¹⁾. 아마도 2007년 3월 6일은 한국의 장애인권 역사와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장차법은 2007년 4월 4일 대통령 서명식을 거쳐 4월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었고(법률 제8341호), 1년 후부터 시행될 것이다.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효성”의 개념이 각자 다르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에게 실효(實效)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실효(失效)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실효성(實效性)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개념의 정립이 장차법의 실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장애이론에 비추어 볼 때 장차법 제정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장애에 관한 개별

1) 2007년 3월 6일은 제17대 국회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장차법은 이 날 본회의 출석 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통과하였다. 그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장차법안은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법률안(2005.9.16 제출, 노회찬 의원 외 36인)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안(2006.12.18 제출, 정화원 의원 외 37인),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률안(2006.12.18 제출, 강향숙 의원 외 53인)의 세 가지였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가 개최된 2007년 2월부터 세 가지 법률안을 병합 심리한 후 상임위 대안을 작성(2007.2.21)하여 이를 상임위 본회의에 상정, 2007년 2월 2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이어 3월 2일에는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적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제도(Waddington and Diller, 2002)가 도입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이 가진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 그 자체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장애는 그러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을 가진 개인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은 그러한 손상이나 기능상실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재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별적 모델은 의학적 모델이며 재활모델이다. 사회적 모델은 개별적 모델의 이러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장애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상이나 기능상실을 가진 개인을 대하는 사회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적응해야 할 존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이다. 사회가 “재활”해야 하는 것이다. 개별적 모델에서는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고 판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장애인이지만 사회적 모델에서는 검사받고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는 사회가 된다.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차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그 장차법이 사회적 모델을 저절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사회적 모델을 실제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²⁾. 장차법에 담긴 내용으로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관련된 요소로는 금지대상 차별행위 및 차별영역의 범위, 시정권한 등이 있겠지만 장애개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실 제도의 장애개념에 사회적 모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제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쟁점은 다섯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첫째 사회적 장벽 문구의 포함 여부, 둘째 장애인 개념의 포함 여부, 셋째 기간규정, 넷째 상당한 제약 포함 여부, 다섯째 차별가능성 포괄 정도.

첫째는 장애개념에 사회적 장벽을 표현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원래 장애계가 제시했던 장애개념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 개념은 개인적 특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의 매개역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제약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매우 훌륭한 개념정리이다. 하지만 이

2) 사회적 모델을 실제 제도에서 사용할 장애개념으로 구체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Mabbett (2002), Degener (2004) 참조.

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법률에 포함될 개념으로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즉,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은 그것 자체가 장차법이 금지하려는 차별이며 따라서 법이 금지하려는 차별을 법이 대상으로 하는 사유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속성으로 포함하여 그 사유를 정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이라는 문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생활은 약간 덜하다 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차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2006년에 운영되었던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은 장애개념에서 제외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정부부처와 장애계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일상 또는 사회생활”이라는 문구는 제외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장애개념에 사회적 모델에서 말하는 사회적 장벽을 문구로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론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제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장애개념을 서술할 때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의학적 용어로 서술하는 것이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더 유리한 것 같다³⁾.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의 ADA나 영국의 DDA, 호주의 DDA 모두 장애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을 표현하는 용어로만 서술하고 있으며, 사회적 장벽을 표현하는 문구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⁴⁾. 향후 장차법상 장애개념의 수정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개념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 4) 미국 ADA는, 장애를 “특정 개인과 관련하여 ① 그 개인의 주요 일상활동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② 그러한 손상의 기록, 또는 ③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 DDA는 장애인을 정의하면서 이를 “통상적인 일상활동(normal day-to-day activities)의 수행능력에 장기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호주 DDA는 장애를 “①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완전 혹은 부분적 손실(loss), ② 신체일부의 완전 혹은 부분적 손실, ③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체의 존재, ④ 신체 일부의 변형·기능 저하, ⑤ 학습의 차이를 유발하는 기능저하, ⑥ 사고과정·인지과정·정서·판단에 영향을 미쳐 행동의 혼란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이상상태로서 ① 현재 존재하거나 ②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에 존재했거나 ③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④ 현재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스웨덴은 장애를 출생 때부터 존재했거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재해나 질병의 결과로 개인의 기능적 능력에 존재하는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지적인 모든 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 DDA와 아일랜드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of 1988)의 장애개념은 호주 DDA와 거의 동일하다.

둘째는 장애개념에 더하여 장애인 개념까지 장차법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장차법에서 말하는 장애는 혜택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차별사유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법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려면 사회적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되도록 넓게 포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장차법의 장애개념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손상·기능상실이나 실재하지 않지만 타인에 의해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장차법상 장애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특성도 포함하지만 현재는 지속하고 있지 않으나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진 특성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장차법의 장애개념은 가변성 혹은 가능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장차법상 장애개념의 이러한 특징은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개념과 갈등을 일으키는 면이 있다. 이 갈등은 적어도 장차법에서는 분명한 것 같다. 법은 살아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고 인간은 어떤 속성을 현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며 항상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장애개념을 가능성의 속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비교적 고정적 속성을 가진 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 하면 논리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즉, 장애개념은 가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확대지향성을 갖지만, 장애인 개념은 고정적·항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주제한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복지법의 개념은 장애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사실 장애개념과 장애인 개념의 차이는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과정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개념을 사고하기 쉽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장애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개념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개념이 제한적인 것은 그것이 가능성의 특성을 가진 장애가 아니라 고정적·항상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개념과 장차법의 장애개념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내리는 정의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지만 장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의 제목 자체에 권리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권리는 어떤 사유가 아니라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별금지를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장차법에서는 장애인 개념보다 차별사유로서

장애개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역시 향후 장차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셋째의 기간규정과 넷째의 상당한 제약은,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어느 정도나 가하는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라에 따라 장기간이나 상당한 제약을 개념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 ADA나 영국 DDA는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 DDA나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장기간 존재해야 한다거나 또 그것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외국 학자들의 평가에서는 장기간이나 상당한 제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다(Bagentos, 2005; Degener, 2004).

다섯째는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통상 장차법상 장애개념에서는 과거 장애나 미래 장애, 장애로 추측되는 경우의 포함 여부로 나타난다. 호주나 아일랜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과거 장애와 장애로 추측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영국은 과거 장애만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모두 장애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에서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장차법은 장애개념 조항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차별금지선언조항에서 과거 장애와 장애로 추측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차별금지선언조항에 포함된 이 요소들이 장애개념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다섯 가지 요소들은 장애개념과 관련하여 각기 차원을 약간씩 달리 한다. 첫째와 둘째는 사회적 장벽 문구의 포함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들이며, 셋째와 넷째는 진정장애인 자격의 요구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들이고, 다섯째는 차별가능사유 포괄 여부에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개념적으로 이들은 분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장차법상 장애개념의 사회적 모델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향후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기존의 몇몇 연구와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우리나라 장차법의 장

개념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각 국의 장차법상 장애개념의 비교

	진정장애인 요건		차별발생 사유의 포괄 가능성			
	장기간	상당한 제약	현재장애	과거장애	미래장애	추측하는 경우
미국 ADA	○	○	○	○	-	○
영국 DDA	○	○	○	○	-	-
독일 장차법	○	○	○	-	-	-
스웨덴 장차법 ¹	○ ²	-	○	-	○	-
호주 DDA	-	-	○	○	○	○
홍콩 DDA	-	-	○	○	○	○
아일랜드 EEA ³	-	-	○	○	○	○
한국 장차법	○	○	○	○(△)	-	○(△)

주 1. 정식 명칭은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y Act (1999).

2. 데게너(Degener, 2004)는 스웨덴 장차법의 장애개념이 장기간의 손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법의 조문을 보면 “every permanent physical, mental or intellectual limitation”으로 되어 있어 위 표에서는 기간규정을 장기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표시하였음.

3.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ality Act)

자료 : Degener(2004)와 Bagentos(2005)의 평가 및 각 국 장차법의 조문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문헌

- Bagentos, Samuel. 2005. “Comparative Disability Employment Law from and American Perspective,”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Journal*, Vol 24, pp. 649 ~ 667.
- Degener, Theresia. 2004. “Definition of Disability,” E. U. Network of Experts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 Mabbett, Deborah. 2002.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European Commission.
- Waddington, Lisa and Diller, Mathew. 2002. “Tensions and Coherence in Disability Policy: The Uneasy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and Civil Rights Models of Disability in American, European, and International Employment Law,” in Mary Lou Breslin and Silvia Yee (eds). *Disability Rights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Ardsley. pp. 241 ~ 280.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적용과 이행을 위한 과제

배 용 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 집행위원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적용과 이행을 위한 과제

배 용 호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 집행위원

장애인권리협약은 한국의 장애계와 NGO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여러 협약이 있지만, 권리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와 NGO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함께 참여했다는 점도 역시 장애인권리협약이 가져온 또 하나의 성과일 것이다. 그 결과로 한국의 NGO와 정부는 장애여성조향, 개인의 이동, 자립생활 등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조향의 채택은 한국의 NGO의 활약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 정부는 워킹그룹에 들어가 활동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갔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반응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지난 3월 30일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서명식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서 서명을 했지만, 아직 국내에서의 비준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선택의정서와 모니터링 제도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조항의 경우 국내법의 개정이 불가피해 그 조항들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매우 적다. 서명식에 대한 기사만 언론에서 다루었을 뿐, 대부분의 국내 주요 언론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무관심 일변도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계의 반응 역시 아직은 미동적이다. 비준연대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비준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비준 이후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장애인권리협약은 이제부터 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과제이며, 제정 과정에 정

부와 NGO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듯이, 비준 이후의 준비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물론 장애인권리협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체는 정부이며, 그 정부가 그것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선택의정서이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정부가 갖게 되는 부담은 물론 클 것이다. 개인의 진정이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위원회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자신이 있고, 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제기구의 한국 시찰이나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면,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가까운 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회원국인 한국의 핵무기개발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 시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IAEA에 얽힌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국제적인 조사의 관례가 국내에도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결국 장애인의 권리침해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만약 이로 인해 국제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는 자신감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동시에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요구한다.

둘째, 장애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협약의 정의에 “장애”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문(Preamble)과 1조 목적에 간접적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에 포함된 장애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과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의된 의학적 모델이 아닌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포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반영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모델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반대

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우리나라의 장애개념이 의학적 모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ICF의 장애개념을 한꺼번에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개념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협소한 장애개념과 정의로 인해 소외되는 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법적 권한(legal capacity)은 법적권한행사(exercise legal capacity)로 해석해야 한다. 협약의 제정 과정에서도 여러 국가의 반대로 의장은 법적 권한과 법적 권한 행사를 두 가지 모두 표기하고 각 국가의 법에 맞게 해석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한국정부의 의지의 문제이다. 정부는 정신보건법 등을 이유로 법적 권한을 권한의 보유로만 해석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인들의 법적 권리 침해와 인권침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편견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잣대로 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는 폭력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와 한국 정부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인권침해에 침묵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법적 권한을 법적 권한 행사로 해석하고 정신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며,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의 법적 권한 행사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모니터링 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전담부서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의 수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부분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문제이지만, 인권의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은 장애인인권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다루는 부서이다. 장애와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고, 장애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인식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된

데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마저 보건복지부 내의 장애인정책팀이 맡게 된다면, 한국의 장애인 문제는 복지의 문제 그 이상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다. 상설조정기구의 경우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정책위원회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그 위원회에 상설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비상설적인 조직이 아니라 상설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처럼 보건복지부 소속의 법인단체들 중심이라는 틀을 깨고, 우리나라의 장애계를 포괄하는 위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문제이다. 비준연대는 제정과정에서부터 이 모니터링 기구는 정부기구가 아닌 NGO에 의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여야 함을 분명히 밝혀 왔다. 물론 협약에 국가인권기구(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가고 밝힌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독립적인 인권 기구이며, 유엔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할 만한 능력을 갖춘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되도록 명시됨으로써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사자의 참여와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모니터링 기구는 국내의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여야 하고 국제적인 역량이 있는 기구여야 하지만 그만큼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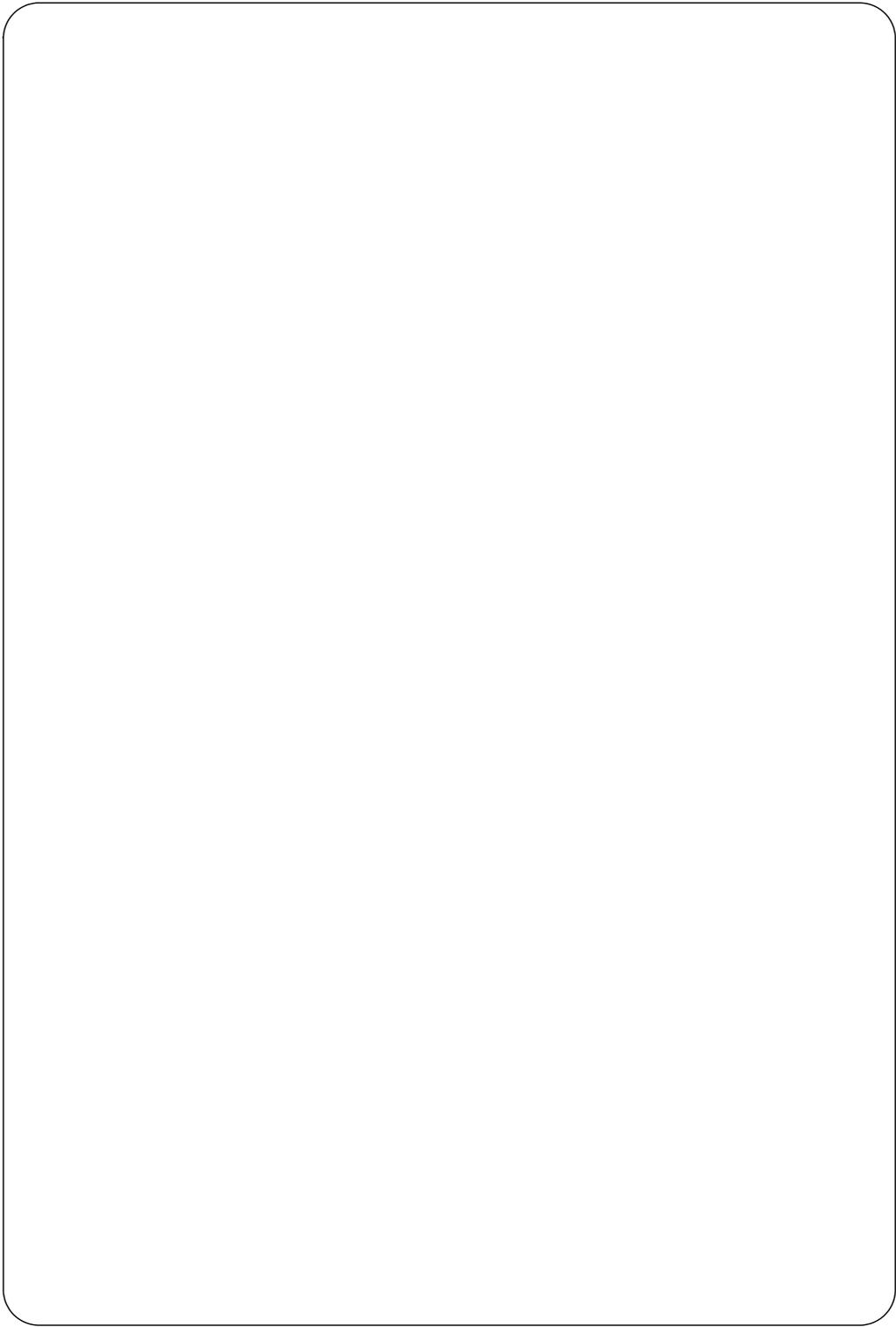
토론5

정 영 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토론5

정 영 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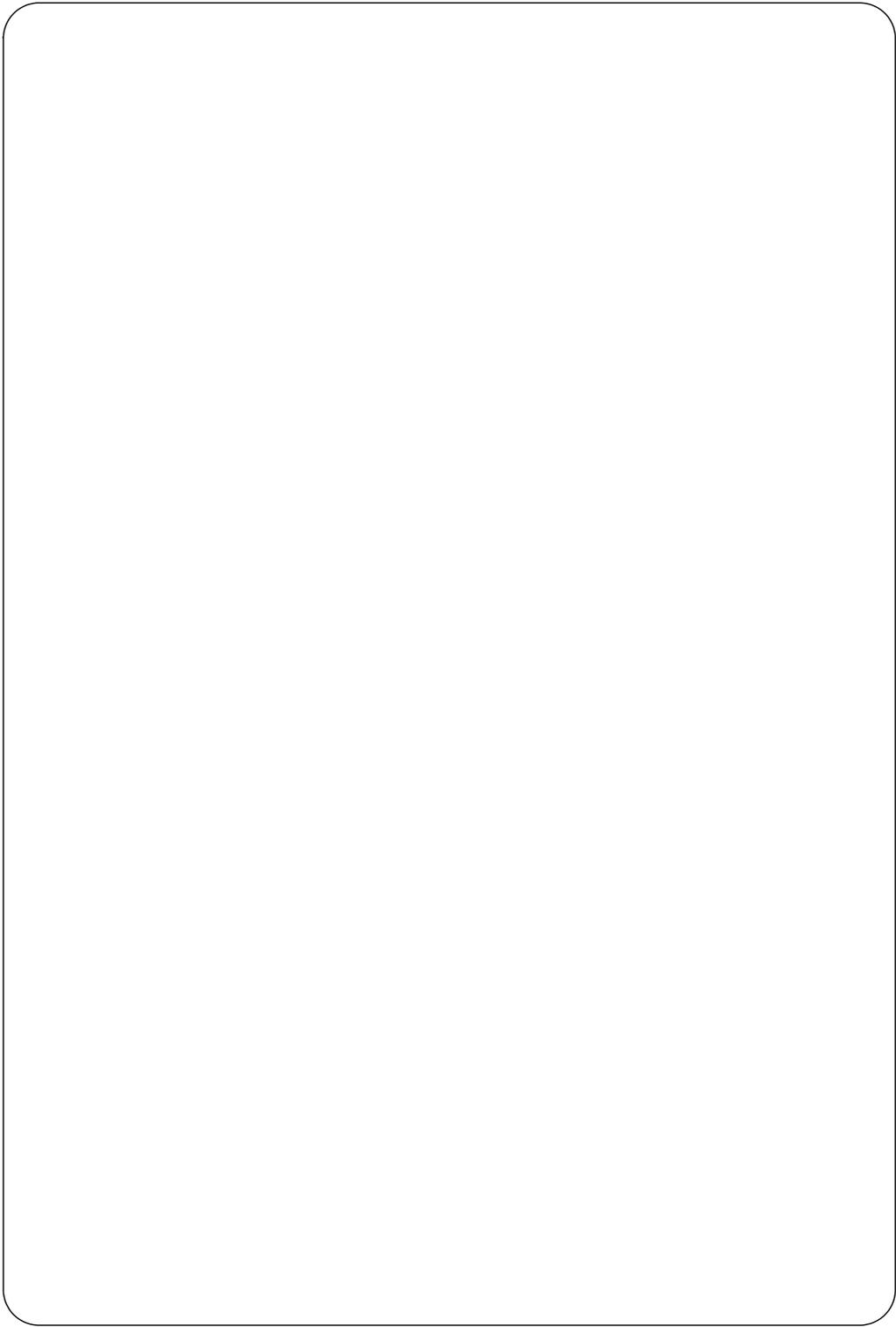
토론6

홍 관 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토론6

홍 관 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부 록

- 부록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부록2. 장애인권리협약 (국문)
- 부록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직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및 거실,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관련 조항에서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해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해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제7호,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 제11호, 제18호, 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및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관련된 행위자 및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및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

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기타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기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해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 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의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

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 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37

조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권리협약 (국문)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 (a) 전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그리고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며,
- (b)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해왔음을 인정하며,
- (c)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며,
- (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 (e)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또한 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 (f)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보다 고취시키기 위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g) 장애관련 문제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주류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h) 장애로 인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i) 장애인의 다양성을 더욱 인정하며,
- (j)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 (k) 이러한 다양한 기제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있고 세계도처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 (l)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식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며,
- (n)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o)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민족, 원주민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는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려하며,
- (q)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 (r)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이행한 의무들을 상기하며,
- (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 (t)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빈곤이 장애인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u)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 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와 안전의 조건들은, 특히 무력분쟁과 외국군의 주둔상황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임을 명심하며,
- (v)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w) 다른 사람들과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이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 (x)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의 향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들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부문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은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서면·음성·평문·낭독자와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문자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대중매체를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화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들을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 편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개조 혹은 특별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를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특정한 장애인 그룹을 위한 보장구를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제4조 일반의무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고려한다.
 - (d) 이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또는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 당국 및 공공기관들이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e) 모든 개인, 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f)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와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장려한다.
 - (g)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의 촉진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촉진할 것과 적정가격의 이러한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 (i)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장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본 협약에 포함된 의무들에 대하여, 편견 없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들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4. 이 협약의 조항은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법률, 협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에서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 한다.
3.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

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이 협약의 조항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그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둘 것을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고양
 -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의 근절
 - (c)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의 증진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 (a) 다음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대중인식사업의 추진 및 지속
 -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진
 - (iii) 직장 및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 장려
- (b)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양성
-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대중매체에 권장
-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장려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식별 및 철폐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a) 학교, 주거, 의료시설과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 (b)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위한 개발 공표 및 점검
 -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c)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훈련제공
 - (d)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
 -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현장지원과 매개체의 제공
- (f)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장려
 - (g) 장애인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장려
 - (h)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술 및 체제에 접근 가능하도록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과 체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장려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당사국은 무력분쟁, 인도적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b) 장애인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로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 받으며, 합리적 편의제공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별에 기초한 요소를 포함하여, 가정 내외에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개호인을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방지, 인식 그리고 사례보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인간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별한 욕구를 고려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기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주의 자유와 거주 및 국적 선택의 자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 (a)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또는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b)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원증명 서류를 획득·소유·이용하고 또는 이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c)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d) 자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은 출생 후 곧 등록이 되어야 하고 출생 후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이러한 권리와 지역사회와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대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비용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촉진
- (b) 양질의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술 그리고 여러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촉진
- (c) 장애인 및 이들과 같이 일하는 전문 담당자들을 위한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
- (d)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하도록 장려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태 및 기술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b)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형태를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할 것
- (c) 인터넷을 포함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d)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여 대중매체에게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권장할 것

(e) 수화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 사생활 존중

1. 어떠한 장애인도 거주지나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불법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및 재화에 대한 정보를 보호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 가족, 부모의 신분 및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 (b) 장애인이 자신의 자녀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출산 및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에 접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그들의 출산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된다. 당사국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과 장애아동에 대한 은폐, 유기, 방임, 격리를 막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초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한다.
4. 당사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

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5. 당사국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포괄적인 가족 내에서 대안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체제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한다.
 - (a)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및 자아 가치에 대한 개발과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b) 가능한 최대한도로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 (c) 장애인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토록 할 것
2.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a)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체제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무상의 의무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통합적이고 양질의 무상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c) 개별적인 요구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d) 장애인은 일반 교육체제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 (e)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들은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학문 및 사회 개발을 최대화 시키는 환경 내에서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및 사회 개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점자, 대체 문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의사소통 수단 및 형식, 적응 및 이동기술에 대한 학습의 장려와 동료집단의 지원 및 멘토링을 장려
 - (b) 수화 학습과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 정체성의 증진을 장려
 - (c)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교육은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형태와 의사소통의 방식 및 수단을 통해 그리고 학문 및 사회 개발을 최대화 시키는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보장
4.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직원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적절하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과 교육기술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 제3차 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과 관련된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은,

- (a) 장애인에게 성적·생식적 보건분야 및 인구에 기초한 공중 보건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위 및 질과 수준의 무상 또는 적정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b) 아동과 노년을 포함하여 조기 발견과 적절한 예방 및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특히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 (c)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보건서비스를 제공 한다
- (d) 의료전문가가, 공공 및 민간보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보급과 훈련을 통한 장

- 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구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e) 건강보험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된 생명보험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한다.
 - (f)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또는 음식과 음료의 차별적인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과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그리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 강화, 확장하며,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 (a)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역량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별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b) 지역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지역공동체에서 최대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직원을 위한 최초 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재활과 관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장구 및 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식, 그리고 사용을 장려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 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인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 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입법

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a) 모집, 채용 및 고용의 조건, 고용의 연장, 경력 개발,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b)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한 기회 및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상,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과,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 (c)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노동권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인이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그리고 직업 훈련과 지속적인 훈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의 구직, 취업 및 지속적인 근무와 복직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와 경력개발을 장려한다.
 - (f) 자영업, 창업, 협력개발 및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한다.
 - (g)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
 - (h)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 장려금 그리고 기타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한다.
 - (i)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의 제공을 보장한다.
 - (j)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서의 직장경험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전문재활, 직업유지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강제근로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정수(淨水)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 관련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적절한 가격의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 (b)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소녀, 장애인노인의 접근을 보장
- (c)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정이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적 지원과 일시적 위탁을 포함한 당사국의 장애인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d)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
- (e) 퇴직 급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a)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 한다.
 - (i)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 한다.
 - (ii)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장애인이 선거와 국민 투표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비밀투표를 할 권리, 정부기관의 모든 직급에 입후보하며, 효과적으로 봉직하고,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보호한다.
 - (iii)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 투표하도록 지원 한다.

(b) 장애인이 공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i)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협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

(ii)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적 수준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구성과 참여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 장애인의 사생활 존중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자료보호에 관한 입법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제정된 보호수단을 준수한다.
 - (b) 통계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윤리적 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된 규범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는 협약하의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한 장애인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들이 직면하는 장벽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분산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를 배포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의 지원에 있어, 국

제협력과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되어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 사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의 교류 및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지원
 - (c)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지식에 대한 연구와 접근에 있어 협력을 촉진
 - (d) 필요한 경우, 기술 이전을 통한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해 당사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립 혹은 지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 되어야 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다음의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위원회 위원은 최대 18명으로 6명이 추가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본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4.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 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의 3분의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월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들은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6명은 최초 선거 직후 이 협약의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본 조항의 관련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10.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로서의 편의와 특권,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 당사국 보고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과정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에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 할 시,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준비하고 이 협약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조항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를 적시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 심사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제안과 일반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늦어질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관련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에 대해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 후 3월 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이러한 심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 또는 권고와 함께 전문기구, 기금, 국제연합 프로그램 및 그 밖에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 하고 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그 밖의 국제연합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의 보고서 작성지침, 제안 및 일반권고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제안 및 일반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 6월 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추후 회의는 2년 또는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41조 기탁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해당지역의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로서, 이 기구의 회원

국들은 이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이 기구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기구는 이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에 관하여 공식 인준서 또는 가입서를 통해 선언한다. 이후에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수정을 알린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해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권한 내의 사안들에 관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해당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이 송부한 날부터 4월 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이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채택서가 기탁된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 후, 당사국들이 자국의 채택서를 기탁한 후 30일 후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개정안이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3. 당사국 회의를 통해 총의에 도달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만 해당되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채택서의 수가 개정안이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 3분의 2를 충족하고 30일 후에 당사국에서 발효한다.

제48조 협약의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해 협약상 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 (a) 통보가 익명인 경우
- (b)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이거나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 (c)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 (d)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구제 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e)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사안의 실제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한

경우

- (f)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제안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가능한 모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이 의정서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자로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본부에서 협약에 서명한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가입한 이 의정서의 서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이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공식적인 인준 또는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에 대해 공식 승인서 또는 비준서를 통해 선언해야 한다. 이후,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수정을 통보해야 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있어, 이 의정서는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이 송부한 날부터 4월 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채택서가 기탁된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 후, 당사국들이 자국의 채택서를 기탁한 후 30일 후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개정안이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이 의정서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제18조

이 의정서문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2007년 4월 인쇄
2007년 4월 발행

발행인 : 안 경 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 B/D 11층
전화 / 02) 2125-9741
FAX / 02) 2125-9738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 313-7593(代)
